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



연구진

최인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장인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일환과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상으로 2017년 11월 혁신읍면동추진단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사업 개편되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2018~19년)이 운영되고, 추진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020년~현재)에 이르고 있음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약칭: 주공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고령화 문제 및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진행되어 왔음. 한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현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기능이 확대된 상황에서 지난 시기 추진된 정책사업을 점검 및 평가하고 향후 미래적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읍면동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주민주권적 요구, 민관협치의 중요성, 주민자치회 확산,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사회정책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향후 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인식조사 및 평가

- 주민자치 분야는 6개 주요사업과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 분야는 4개 주요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부처 사업은 1개 주요사업과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주민자치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관련 연구자, 교수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및 주공사업 평가를 진행하였음

□ 주민자치 분야

- 주민자치 분야의 추진단 사업 계층화를 통한 사업 중요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분야에서는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보다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이 더 중요한 세부사업으로 분석되었음
-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과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보다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가 더 중요도를 가진 사업으로 분석되었음
- 추진단의 사업은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읍면동(지역, 마을단위) 중심의 사업’이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 분야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과 ‘현장의 전문성 부족’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지역의 역량강화’, ‘현장의 인력 충원’, ‘사업예산의 확보’ 순으로 조사되었음

□ 보건복지 분야

- 보건복지 분야의 추진단 사업 계층화를 통한 사업 중요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분야에서는 ‘주민력 강화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혔으나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 분야 또한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가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개편’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보다 중요도가 높게,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의 세부사업에서는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과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보다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음

- 추진단의 사업은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과 현장 중심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지자체 보건복지 인력확충’과 ‘시군구, 읍면동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과 주민력 강화 지원’이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현장의 인력 부족’과 현장의 전문성 부족’ 및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 등이 꼽혔으며,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현장의 인력 충원’, ‘지역의 역량 강화’, ‘현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순으로 조사되었음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및 역할

- 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충분한, 매우 충분한 수준’의 응답은 매우 낮았음
-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모두 ‘관련부처 간의 소통 및 협업 부족’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부족’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추진단의 한시적 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 등이 지적되었음
-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와 ‘사업예산 확보’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확대’,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확대’ 및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
- 추진단이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 모두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 집행의 유연성 보장'과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응답되었으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반대의 응답을 보임

- 한편 추진단이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지원 사항에 대한 질문에 주민자치 분야는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정책전문성 강화'라는 응답이 3.45%에 불과한 반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동 항목에 대한 응답이 17.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성과 및 시사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주공사업이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 및 활성화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비교적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행정에서 현장에 밀착된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가 읍면동 현장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추진단의 주공사업을 통해서 읍면동 현장에 안착되어 향후 정책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일 것임
- 다만,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향후 주요한 성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난 3~4년간 상당한 수준의 보건복지 관련 인력이 읍면동에 확충되면서 현장 복지 중심의 정책노력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부족 또는 현장 인력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읍면동의 주민조직 강화,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조직과 협력하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연계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정책제언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법제도적 기반마련 및 추진단의 읍면동 정책 사업에 대한 역할과 위상 강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체계 강화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을 다부처 읍면동 정책사업의 총괄적 조정 및 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
 - 읍면동간 경험(사례) 공유 및 읍면동 차원 정책사업 추진 활성화

-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와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과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협력 시스템 구축

- **자치분권 2.0과 읍면동 권한 강화**
 - 자치분권 2.0과 ‘특례읍면동’ 정책 추진
 - 읍면동 뉴딜사업과 읍면동 자율계정 도입 및 추진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구성체계 및 방법 6

제2장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논의

제1절 읍면동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관련 정책변화 11

- 1.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동 정책변화 11
- 2. 지방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 정책의 변화 20
- 3. 지방자치와 읍면동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 23
- 4. 읍면동 행정기능의 변화 27

제2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변화과정 30

- 1. 개요 30
- 2. 추진경과 31
-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변화 32

제3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 37

- 1. 주민자치회 확산과 활성화 37
- 2.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39
- 3.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42
- 4.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45

제3장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식조사 및 평가

| | |
|---------------------------------------|----|
| 제1절 조사 설계 | 51 |
| 제2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식조사 및 평가 | 57 |
| 1. 인식조사 및 평가의 개요 | 57 |
| 2.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별 조사 및 평가결과 | 62 |
| 3.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공통문항 분야 조사 및 평가결과 | 86 |
| 제3절 평가결과 종합 및 시사점 | 96 |
| 1. 평가결과의 종합 | 96 |
| 2. 성과 및 시사점 | 98 |

제4장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향후 방향

| | |
|---|-----|
| 제1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개선방안 | 103 |
| 1. 법제도적 기반마련 | 103 |
| 2. 추진단 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 104 |
| 제2절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 108 |
| 1.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 | 108 |
| 2.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 | 109 |
| 3.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및 읍면동 주민자치와 보건복지의 협력 시스템 | 111 |
| 제3절 자치분권 2.0과 읍면동 권한 강화 | 113 |
| 1. 자치분권 2.0과 특례 읍면동 | 113 |
| 2. 읍면동 뉴딜사업과 읍면동 자율계정 | 115 |

제5장 | 결 론

제1절 연구의 종합 121

- 1. 사업평가 및 성과정리 종합 121
- 2. 성과 및 시사점 124

제2절 정책 제언 125

- 1. 법제도적 기반마련 및 추진단의 읍면동 정책사업에 대한 역할과
위상 강화 125
- 2.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126
- 3. 자치분권 2.0과 읍면동 권한 강화 127

【참고문헌】 129

【부록】 133

| | |
|---|----|
| 〈표 1-1〉 연구 분석의 기본 틀 | 7 |
| 〈표 2-1〉 법정동과 행정동의 비교 | 17 |
| 〈표 2-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민자치 분야 변화과정 | 34 |
| 〈표 2-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보건복지 분야 변화과정 | 35 |
| 〈표 2-4〉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46 |
| 〈표 3-1〉 주민자치분야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 | 52 |
| 〈표 3-2〉 보건복지 분야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 | 54 |
| 〈표 3-3〉 다부처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 | 55 |
| 〈표 3-4〉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추진분야 재분류 | 55 |
| 〈표 3-5〉 분야별 표본의 유효응답 확률 | 58 |
| 〈표 3-6〉 Nunnally의 신뢰도 수준 권고 값 | 59 |
| 〈표 3-7〉 리커트 척도 문항의 분야별 신뢰도 수준 | 59 |
| 〈표 3-8〉 응답자의 성별 분포 | 60 |
| 〈표 3-9〉 응답자의 연령 분포 | 60 |
| 〈표 3-10〉 주민자치 분야 사업의 중요도(대분야) | 62 |
| 〈표 3-11〉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 | 63 |
| 〈표 3-12〉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 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 | 64 |
| 〈표 3-13〉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사업이 주민자치분야에 기여하는 정도 | 64 |
| 〈표 3-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분야별 영향력 | 65 |
| 〈표 3-15〉 사업 추진의 문제점 | 66 |
| 〈표 3-16〉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 67 |
| 〈표 3-17〉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68 |
| 〈표 3-18〉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69 |
| 〈표 3-19〉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71 |
| 〈표 3-20〉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72 |
| 〈표 3-21〉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중요도(대분야) | 74 |

표목차 | LIST OF TABLES

| | |
|---|----|
| 〈표 3-22〉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 중요도 | 74 |
| 〈표 3-23〉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의 세부사업 중요도 | 75 |
| 〈표 3-24〉 주민력 강화 지원의 세부사업 중요도 | 75 |
| 〈표 3-25〉 보건복지 분야 활성화와 발전 기여도 | 76 |
| 〈표 3-2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분야별 영향력 | 77 |
| 〈표 3-27〉 사업 추진의 문제점 | 78 |
| 〈표 3-28〉 사업 추진의 개선할 점 | 79 |
| 〈표 3-29〉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81 |
| 〈표 3-30〉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82 |
| 〈표 3-31〉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83 |
| 〈표 3-32〉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85 |
| 〈표 3-33〉 사업 추진의 문제점 분야별 비교 | 86 |
| 〈표 3-34〉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분야별 비교 | 88 |
| 〈표 3-35〉 추진단의 조직규모 및 예산 분야별 비교 | 90 |
| 〈표 3-36〉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분야별 비교 | 91 |
| 〈표 3-37〉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분야별 비교 | 93 |
| 〈표 3-38〉 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분야별 비교 | 94 |

| | |
|--|----|
| 〈그림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5 |
| 〈그림 2-1〉 하부행정기관의 정책변화 | 16 |
| 〈그림 2-2〉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 | 31 |
| 〈그림 2-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경과 개요 | 31 |
| 〈그림 2-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 분야 | 33 |
| 〈그림 2-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념도 | 43 |
| 〈그림 3-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계층화 | 62 |
| 〈그림 3-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분야별 영향력 | 65 |
| 〈그림 3-3〉 사업 추진의 문제점 | 67 |
| 〈그림 3-4〉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 68 |
| 〈그림 3-5〉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69 |
| 〈그림 3-6〉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70 |
| 〈그림 3-7〉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72 |
| 〈그림 3-8〉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73 |
| 〈그림 3-9〉 보건복지 분야 활성화와 발전 기여도 | 76 |
| 〈그림 3-10〉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분야별 영향력 | 77 |
| 〈그림 3-11〉 사업 추진의 문제점 | 79 |
| 〈그림 3-12〉 사업 추진의 개선할 점 | 80 |
| 〈그림 3-13〉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81 |
| 〈그림 3-14〉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83 |
| 〈그림 3-15〉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84 |
| 〈그림 3-16〉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86 |
| 〈그림 3-17〉 사업 추진의 문제점 분야별 비교 | 87 |
| 〈그림 3-18〉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분야별 비교 | 89 |
| 〈그림 3-19〉 추진단의 조직규모 및 예산 분야별 비교 | 90 |
| 〈그림 3-20〉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분야별 비교 | 92 |
| 〈그림 3-21〉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분야별 비교 | 93 |

그림목차 | LIST OF FIGURES

| | |
|---------------------------------------|----|
| 〈그림 3-22〉 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분야별 비교 | 95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일환과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상으로 2017년 11월 혁신읍면동추진단이 설치되었으며, 이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사업 개편되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2018~19년)이 운영되고, 추진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020년~현재)에 이르고 있음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약칭: 주공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고령화 문제 및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진행되어 왔음. 한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현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기능이 확대된 상황에서 지난 시기 추진된 정책사업을 점검 및 평가하고 향후 미래적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읍면동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주민주권적 요구, 민관협치의 중요성, 주민자치회 확산,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사회정책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연혁과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함과 더불어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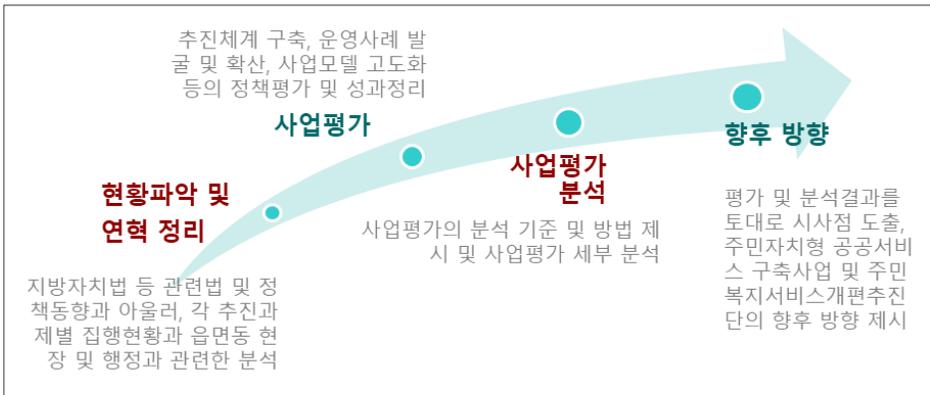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이 출범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 내용적 범위

- (현황파악 및 연혁 정리) 2018년 4월부터 추진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개념 및 정의, 비전과 전략, 추진배경, 추진과제, 정책변화 과정 정리
 - 읍면동 현장 및 행정과 관련한 사회정책적 환경변화 정리
 - 추진과제별 현황 및 주요내용
- (사업평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간 중요도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계층분석법(AHP)을 통해 진행
 - 정책사업 평가 및 성과정리
 -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주요 성과 정리
 - 전문가, 공무원, 관련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진행
- (평가분석 및 대안 제시) 정책사업 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를 분석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 분석 진행
 - 기초자료 정리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평가 및 향후방향 제시
- (향후 방향)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현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미래 방향을 제시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향후 방향 제시

-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 제시

〈그림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대상적 범위

- 행정안전부의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주민복지서비스개선 추진단)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업무
 - 2018년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분야의 9개 추진과제
 - 2019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성과 창출·확산 분야의 9개 추진과제
 - 2020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10개 추진과제

2. 연구의 구성체계 및 방법

□ 문헌연구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법제도 및 정책사업 분석
 -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관련법, 지역사회보장법 등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관련 법제도 및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자료 분석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 평가단의 구성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주민자치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공무원과 주민 및 전문가 등 7~10명(전체 20~30명) 이내로 구성
 - 공무원: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 전문가: 주민자치, 읍면동 보건복지 관련 학자, 연구자, 현장활동가 등
 - 주민: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 평가방법

- 대상: 2018년 4월 이후 추진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방법: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업 중요도 및 평가를 수행
- 내용: 각 사업별 쌍대비교를 통해 일관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대안,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을 모색

□ 연구의 구성체계

- 연구 내용의 논리적 구성 및 적정 분석방법의 활용
 - 전체 연구내용의 논리적 구성과 각 연구 단계별로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표 1-1〉 연구 분석의 기본 틀



제2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논의

- 제1절 읍면동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관련 정책변화
- 제2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변화과정
- 제3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

1.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동 정책변화

□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읍·면·동의 개념

○ 하부행정기관의 법률적 규정

-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읍·면·동 등을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04조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은 직속기관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지역을 기준으로 설치된 기관만을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함
- 동(洞)은 기본적으로 도시적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자치구에 설치되는 하부행정기관의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동은 읍·면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임
-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담 및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음

○ 읍·면·동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은 지역과 기능을 기준으로 자치권이 없는 구(일반구)와 읍·면·동임
- 현행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은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사무를 지역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음

□ 읍·면·동의 설치·운영 기준

○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에서의 읍·면·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조례로서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 읍·면·동은 자치권이 없는 하부행정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읍·면·동의 궁극적인 설치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함(지방자치법 제115조)
- 동법 시행령은 출장소의 설치요건을 ①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③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등으로 제시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1호, 2호, 3호)
- 다만, 출장소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첫째,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 둘째, 행정동이 설치된 경우 등을 제시함에 따라 읍·면·동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설치하는 출장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행정기관의 업무내용에 따라 다수의 행정기관이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단일행정기구에 의한 통합처리보다 행정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편의성을 향상시키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다수의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참여를 강화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클수록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보다 관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바, 소규모의 하부행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수요와 선호를 정책에 반영하기 유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 하였음

○ 설치기준

-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일반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함
-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인 경우, 일반구를 설치함
-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은 예외적으로 분구 후 평균인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구를 설치하지 않는 시는 본청에 6개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를 설치한 시는 본청에 4개 실·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읍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중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인 지역에 설치함(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 시가지 구성지역 내 거주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며, 도시적 산업 종사자가 전체가구의 40% 이상인 경우 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2만 명 미만의 경우에는 군청 소재지의 면 또는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1개 면을 읍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면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각급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면행정 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하고,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면을 1개의 행정면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동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함

○ 행정구역 조정 시 검토사항

- 행정구역 조정 시 법정요건 구비여부, 해당 지역주민의 지지도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함

- 「지방자치법」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치분합(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주민편익은 생활권 일치여부 등에 관한 고려이며, 지역개발은 개발권역과 합치여부, 개발전망,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를 의미함
- 지리적 여건은 해당지역의 교통(접근성), 지세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역사적 전통성은 지역의 문화, 풍속, 생업, 지역주민의 화합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행·재정적 효과는 하부행정기관의 구역규모의 적정화, 재정능력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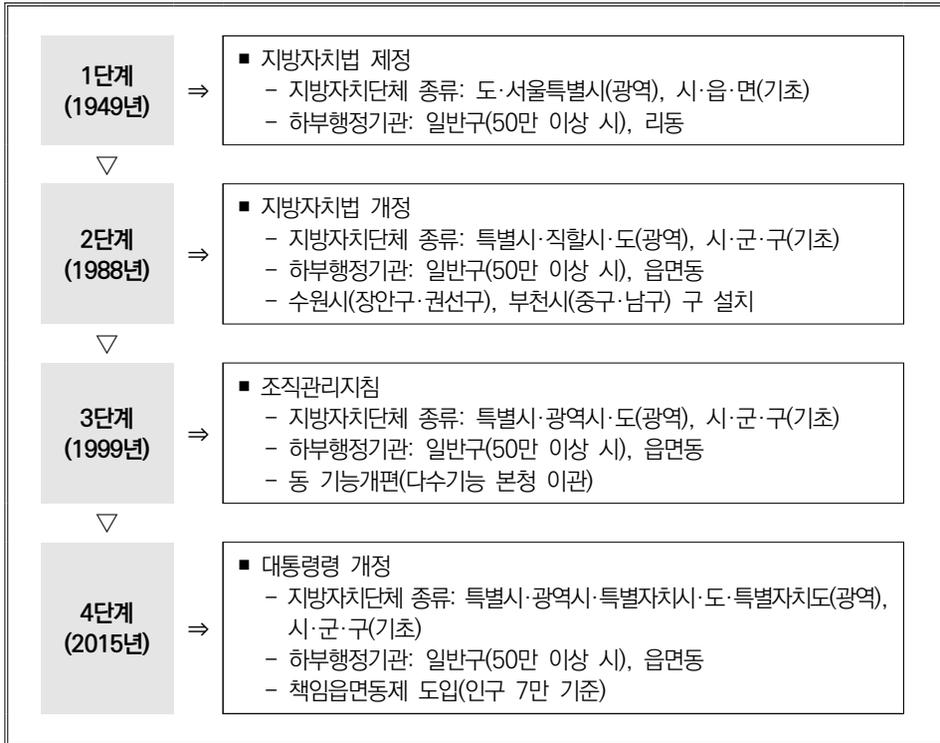
□ 읍·면·동 제도변화 연혁

○ 읍·면·동의 역사적 변화

- 일본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로 읍·면·동 구역이 개편되었고, 1945년 미군정 시기에 일본강점기 시기의 구역 명칭이 그대로 승계됨
- 1906년 ‘면내 동·리·촌의 폐치·분합과 그 명칭에 관한 건’에 근거하여 면으로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을 일원화함
- 1917년 10월 행정구역개편으로 정회를 설치하였으며, 1947년 동회로 변경되었고, 1955년 동 조직이 자치법 상의 말단 행정조직으로 설정됨
-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와 읍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존재하던 동이 읍·면과 대등한 지위로 놓임
- 1999년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을 문화, 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및 시민교육 등으로

- 제시하고,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
- 1999년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는 행정기관의 기초단위로써 수행하던 기능을 시·군·구청으로 이관함
 -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등 주민생활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 주택, 교통, 지방세납부 등은 시·군·구청으로 이관함
 - 2000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타목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시·도, 시·군·구의 사무로 지정함
 - 현행의 읍·면·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함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

〈그림 2-1〉 하부행정기관의 정책변화



○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

- 법정동은 대한민국 법정구역으로, 법률(관습법)로 지정된 일정한 명칭과 영역을 지닌 구역임
- 법정동의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법정동은 직접적인 행정기능이 아닌 전통적인 지역구분 및 주소, 지적(地籍) 분야에서 사용되고, 공부상에서만 존재함
- 법정동은 지역 공동체가 법정동을 폐지하거나 개명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강동구 하일동), 기존 행정구역 단위나 단위의 일부가 다른 상위 행정구역 경계로 편입되면서 설치되는

- 경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거의 없음
- 행정동은 법정동을 관할하는 일차적 행정기관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후,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
 - 초기에는 법정동만 존재하였으나, 세분화된 동(법정동)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법정동을 묶을 필요가 생겨남
 - 기존 동과 구별되는 명칭으로 동회(洞會)를 사용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 동회는 모두 동으로 명칭이 일원화되었음
 - 일반적으로 행정동은 법정동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함
 - 하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대체로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과 동일하게 정해짐
 - 하나의 법정동을 복수의 행정동이 일부분씩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의 이름은 대체로 해당 법정동의 이름에 숫자를 붙여 구분함
 - 복수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의 이름은 비교적 규모나 대표성이 큰 법정동명 하나를 사용하거나, 행정동 관할 내 법정동들 이름의 맨 앞 글자 또는 앞글자와 뒷글자 등을 조합함
 - 하나의 행정동이 어떤 법정동의 일부와 또 다른 법정동의 일부에 걸쳐 관할하기도 함
 - 읍/면을 동으로 전환할 때, 기존 읍/면의 명칭을 따라 정함
 - 행정동의 이름이 반드시 법정동과 직접 연관되지 않을 수 있음

〈표 2-1〉 법정동과 행정동의 비교

| 구분 | 법정동 | 행정동 |
|-------|--------------------|----------------|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 조례 |
| 설치 목적 | 소관 사무의 분장처리 |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 |
| 변경 절차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후 조례제정 | 조례제정 |
| 변경 정도 | 경직적 | 탄력적 |

□ 읍·면·동의 설치기준

- 지방자치법은 시·읍의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중에 읍의 설치기준을 제시함
 - ‘읍’의 설치기준은 구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 또는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2만이 되지 않더라도 1개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 2호)
 - 「지방자치법」은 시·읍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행정입법(시행령)으로 위임하였고, 동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일 것과 해당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 등을 제시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1호, 2호)
- 읍·면·동의 성격은 출장소와 동일한 하부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동법 동령 동조 동항 1호)와 동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동법 동령 동조 동항 2호)를 동일하게 출장소 설치 제한요건으로 제시한 바, 역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은 출장소와 동일한 하부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읍·면·동은 관할구역의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분장된 소관사무가 명확하며, 각 소관사무는 종합성과 계속성을 가짐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1호부터 3호까지 제시된 출장소 설치요건에 근거하여 미루어 보면, 특정한 지리적 경계를 갖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성격이 있음

□ 읍·면·동의 주요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범위 규정

-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인데,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역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국제교류 및 협력사무를 포함하여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함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부행정기관인 동을 설치하고, 동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제5항)

○ 읍면동의 사무는 총 28개 법령에 근거한 99개 사무임

- 읍면동의 사무는 6개 법률, 9개 대통령령(규정, 시행령), 13개 부령(시행규칙) 등 총 28개 법령에 근거한 99개 사무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민방위 기본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부의 소관법률임
- 읍면동의 사무를 규정하는 법률 중 행정안전부 소관법률 이외의 법률로는 법무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물부가 소관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임
- 이외의 읍면동의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법의 위임규정에 의한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포함함
- 읍면동의 사무로 전술한 99개 사무는 28개 개별법령에서 읍·면·동의 사무로 직접 지정한 사무임
- 읍면동의 사무 중 법령상 위임사무는 중앙부처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 해당 법령의 재위임규정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자치구청장이 읍·면·동장의 사무로 지정하는 체계임

2. 지방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 정책의 변화¹⁾

□ 지방자치의 변화와 주민자치 공백기(~1999년)

- 1949년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였고 그 하부행정 구역으로서 동과 리를 두었고, 동리의 구역은 자연부락을 기본으로 하였고 그 명칭과 구역을 시읍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동장과 리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임기는 2년이었음
- 1952년에는 읍면의회가 구성되었고 읍장과 면장이 선출되어 통합형의 기관구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1956년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읍장과 면장을 주민직선으로 개정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1958년에는 시읍면장과 동리장의 직선제가 폐지되고 임명제로 바뀌었음
- 1960년에는 시읍면장과 동리장의 직선제가 부활하였는데, 이처럼 읍면과 동리장의 선거제도는 직선과 간선, 임명으로 다양하고 불안정하였음
- 한편 1952년 이후의 읍면자치에 대해서 인구규모가 평균 1만 명 정도였지만, 어떤 면은 1,378명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재정자립도가 면은 18.7%, 읍의 경우는 44.1%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시읍면자치에서 시군자치로 지방자치의 계층을 변경하였고, 읍면은 군의 하급행정구역으로 전환되었음
- 결국 한국의 지방자치는 1988년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로 하고 읍면동장의 직선제는 다시 도입되지 못하였으며, 시군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1991년의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음

1) 김주원 등(201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 주민자치위원회 정책 전개기(1999년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 주민자치위원회는 1998년의 읍면동사무소 기능개편을 통한 행정개혁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행정개혁과정에서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의 2/3를 축소하고 신속한 행정과 중복행정 방지를 위하여 일부 읍면동 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를 시군구청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여유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었음
- 읍면동 주민들의 문화, 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및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입안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앙정부는 1998년부터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개편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기능과 인력이 감축된 공간에 주민복지나 문화정보센터로서 기능을 하도록 구상한 것임
- 도시지역인 동에서는 1999년부터 시범실시를 하였고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시에는 2000년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범실시를 추진함
- 여기서 2000년 행안부에서 준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의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이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교양이나 여가, 취미프로그램 운영에 그침(김주원 등, 2019)

□ 주민자치회 정책 전개기(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정책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은 의외의 곳에서 제기되었음
- 시군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법률」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2010년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델을 연구하였고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이라고 하는 3가지의 모델을 제시하였음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3가지의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법현실에서는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실시할 수 없고 협력형만을 시범 실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
-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자치회의의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었음
- 특별법 27조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되어 있고,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의 기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를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라기 보다는 행정사무를 민간의 협력하여 수행하는 준행정조직으로서의 인상을 보여줌
- 동법 29조 4항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실시와 신청을 받아 전국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를 하였고, 시범실시 읍면동별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 예산지원을 하였는데, 이 중 10개소는 안심마을형 주민자치회로 추가적으로 5억원이 특별교부세 예산지원을 함

□ 주민자치회 정책 수정기(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7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인용하고 있음
- 그 정책수단으로서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자치분권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며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 확대를 위한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의 개최, 분과위원회의 개방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여 지자체에 안내함

- 또한 주민자치회의 기반마련과 읍면동 안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컨설팅, 읍면동장 및 주민에 대한 교육,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매뉴얼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진행함
- 표준조례안 제2조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다는 표현이 있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주민총회란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의미한다는 규정함
- 또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18년의 표준조례안 개정에서 주민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하여 공개모집과 추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2017년까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실질적인 선정권한을 가졌던 위원선정위원회를 폐지하고 6시간의 주민자치관련 사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신청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3. 지방자치와 읍면동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를 1987년에 도입하였음. 당시 전국 5대 광역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 49명을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읍면동에 최초 배치한 것이 행정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도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음
-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함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한 바 있음

□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1995~99년)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대상자들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 지역(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음
-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은 시군구 보건소에 복지서비스 전담 과(課)를 설치하여 진행되었으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 사무소로 복지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업무분장이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음
- 사업의 인력배치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사무소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1987~1994년 읍면동에 총 3천명의 별정직 전문요원을 배치하였고, 이는 1999년 사회복지직 공채 시작의 계기가 되었음

□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2004~06년)

-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가족해체 및 긴급, 위기가정 증가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지방화에 따른 지역단위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사회복지의 구심체적 역할과, 당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능동적, 전문적, 효율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시범사업은 9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었으며 공공복지정책 집행의 효율성 향상, 업무처리 절차 개선, 사회복지 기획기능의 강화 등의 효과가 있었음
- 시범사업 지역: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울산 울주군, 충북 옥천군
- 시범사업의 인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사무소 소속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하고, 읍면동에는 상담소 개념으로 각 1명 파견 배치하여 사업을

진행함

-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효과로는 공공복지정책 집행의 효율성, 책임성, 공정성, 전문성의 강화, 상담의 충분성과 대응성 향상, 복지대상자 발굴·보호 실적의 증가, 급여결정의 신속성 증가,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사회복지 기획기능의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활성화 등이 꼽힘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2007년)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대 부문(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체육·관광)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정부에서 2006년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요구와 전달체계 개편에 착수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구 주민생활 관련 조직을 통합(주민생활지원과)하고, 시군구는 급여 조사·결정 등 전문기능, 읍면동은 현장방문 및 신청접수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였음
- 개편에 따른 인력은 조사·결정 기능 이관에 따른 읍면동 인력을 시군구로 이동하고,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음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2012년)

-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함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시키고자 함

□ 읍면동 복지 허브화(2016~17년)

-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2015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 이후 연두업무보고,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2016년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함

-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의 기구개편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였음
- 2014~2017년 복지인력 6,000명 확충분을 맞춤형 복지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최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였음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2017년~현재)

- 찾아가는 보건·복지와 더불어 행정혁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 종합적 시각의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을 전담 수행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등 2018~2022년 보건복지인력 15,000명을 확충하여 읍면동에 배치 추진할 예정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2017~2022년간 총 19,000명의 인력을 배치하게 됨

□ 그간의 성과와 한계

- 그간의 복지전달체계는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기반을 확충한 이후 주민과 밀착된 읍면동으로 전달체계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주민참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행정 전달체계 구현을 목표로 해왔음
- 다만,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와 읍면동의 보건복지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사고의 반복적 발생과 단기적 처방의 한계점이 드러나 왔으며, 따라서 문제해결 중심의 지역사회 민·관의 기능적 연계체계가 필요함

4. 읍면동 행정기능의 변화

□ 읍면동 중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정책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보건, 복지, 주거, 평생교육, 고용, 문화, 체육, 관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를 읍면동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읍면동 중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정책의 추진배경은 21세기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향상을 위한 것임
- 1999년 2월 5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4월 7일에 기능전환 보완 지침 등을 마련해서 도시지역의 동사무소와 농촌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1, 2단계로 나누면서 도시지역은 2000년까지, 농촌지역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음
- 현행 읍면동 제도는 존치하되 그 기능을 주민등록,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청소, 주택, 교통, 지방세납부 등 일반 행정업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읍면동 중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정책의 추진목적은 첫째,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의 시군구청 이관에 의한 신속한 행정의 수행과 중복행정의 방지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사무와 인력의 시군구청 이관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임
- 읍면동 기능이관으로 사무와 인력이 줄어들면서 생긴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주민의 문화, 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및 시민교육 기능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함

- 읍면동 중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정책은 주민사회가 행정에 대한 수동성,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건전한 민주시민사회로 자기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지방화시대에는 그 지방의 주인인 주민을 위한 주민중심의 민주적인 행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체계를 통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주민중심의 행정체제가 구축되어야만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를 위하여 시군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업무와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함 (김필두·최인수, 2018)

□ 책임 읍면동제 추진정책

- 교통통신의 발달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는 읍면동의 역할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기존 읍면동의 역할이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보조기관의 역할에 머물렀으나, 향후에는 지역사회 요구 실현과 주민자치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의 접점기관으로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
-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읍면동의 역할변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현장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읍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의 확대·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음
- 책임읍면동제는 대동제의 모형을 정립하는 중간과정에서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읍면동의 유형이며, 대동제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일반구 혹은 일반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3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서 일반구 혹은 일반시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반면에, 책임읍면동은 책임읍면동 권역의 일반 읍면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심이 되는 읍면동의 장은 일반 읍면동의 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서 주민에 대한 현장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의 자치모델이라 할 수 있음

- 책임읍면동은 대응동 모형과 행정면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응동 모형은 2~3개의 읍 또는 2~3개의 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그 가운데 하나의 읍 또는 동의 조직기구와 관장기능을 확대하여 중심읍 또는 중심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형임
- 중심지역의 읍 또는 동을 책임읍 또는 책임동으로 지정하여 시군구본청 또는 일반구·일반시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면지역의 경우는 인구가 과소한 2~3개 면 중에서 중심이 되는 1개의 면을 행정면으로 지정하고, 행정면에서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 면의 대부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임
- 대응동이 기존 사무에 더하여 본청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행정면은 본청 기능의 위임 없이 인근면에서 이관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책임읍면동은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읍면동을 생활자치의 장으로 전환하려는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음(김필두·최인수, 2018)

제2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변화과정

1. 개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2017년 혁신읍면동추진단,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거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에 이르고 있음
- 추진단 설치 근거로써 현재 대통령훈령(제413호)으로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설치·운영규정」을 두고 있음
 - 훈령에서는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음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이란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활동을 말한다(훈령 제2조).

- 추진단은 읍면동 기능을 주민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단의 조직은 1단 3팀 22명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복지부 등 7개 부처의 공무원 13명과 전문임기제 6명, 지자체 1명, 기간제 1명, 민간파견 1명으로 구성됨
- 한편, 추진단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설치·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관련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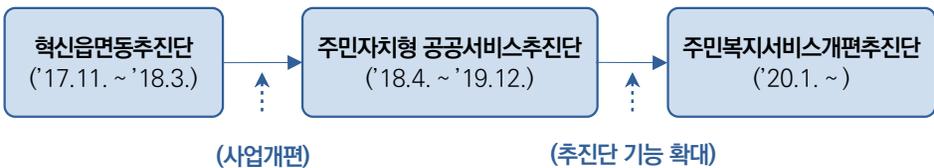
〈그림 2-2〉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



2. 추진경과

□ 개요

〈그림 2-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경과 개요



자료: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 2021)

□ 사업도입 및 모델발굴(2017.8월~2018.12월)

- 2017년 8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상이 발표되어 『혁신읍면동추진단』이 설치되었으며, 2018년 국회 예산이 전액삭감됨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하고 행안부 지원하는 형태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창출·확산하는 형태로 사업이 개편되었음

-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공유, 소규모 도시재생(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지원 모델을 검토함

□ 사업확산(2019.1월~현재)

- 사업 도입 이후부터 읍면동 현장인력 확충, 주민자치회 확산, 공공서비스 연계, 지자체 컨설팅, 「주민자치·보건복지 매뉴얼」 읍면동 배포 등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지역사업 연계를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사업 지원모델* 설계, 자치·돌봄·재생 등 협력 확대를 위한 5개 부처(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협약 체결(2020.3월)이 이루어짐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기능 추가(2020.1월)

- 추진단의 확대 개편을 위해 주민복지 전달체계 개편 업무를 수행토록 청와대 사회수석실, 행안부, 복지부 등 협의회가 진행되어 2020년 1월 추진단 명칭을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추진단 기능에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추가되었음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변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크게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지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행정안전부 이외의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과 2021년 신설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 구성됨

〈그림 2-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 분야



-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교육 및 컨설팅,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사업 초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2019년에는 읍면동 행정혁신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지역의 주민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사업 초기에는 기존에 부족했던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음
-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연도별 변화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민자치 분야 변화과정

| 연도 | 분야 | 추진과제 |
|------|----------------------|--------------------------|
| 2018 |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 |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 |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 및 지원 |
| | | 시책사업을 통합 특화 마을모델 창출 |
| |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 우수사례 발굴·확산 |
| | |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
| 2019 |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 주민자치 제도적 기반 마련(계속) |
| |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계속) |
| |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 지역 공모사업 연계·지원 |
| | | 주민참여 지역사업 추진 |
|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성과 창출·확산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
| | | 정부·자치단체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원 |
| 2020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계속) |
|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 |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 | |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 |
| | | 지역 공모사업 연계·지원(계속) |
| 2021 |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계속) |
|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계속) |
| |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지원(계속) |
| |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계속) |
| | |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계속) |
| |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다부처) |

〈표 2-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보건복지 분야 변화과정

| 연도 | 분야 | 추진과제 |
|--------------------------------|--------------------------|-------------------------------------|
| 2018 |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
| | |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확충·관리 |
| | |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
| 2019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
| |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
| | |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
| 2020 |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공공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 |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계속) |
| |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계속) |
|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계속) | | |
| 2021 |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
| |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계속) |
| |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계속) |
|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계속) | | |

○ 2개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는 2018년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부터 소규모 도시재생 및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등 주로 국토부 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2020년 3월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5개 부처(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가 협약을 맺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사업이 2021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2020년 새롭게 사업에 반영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업은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 및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서비스 전달과정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 관련 부처 공공서비스 연계 및 통합, 읍면동 인력 및 조직 모델 설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2021년에는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추가되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있음

제3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²⁾

1. 주민자치회 확산과 활성화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제도 기반 마련 및 공론장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법, 조례 등 주민자치회 제도 근거 마련을 추진
 - 주민자치회 관련법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역할, 재정지원 등 법 제화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는 주민자치회 대표성·민주성·집행력 강화 중심 조례(안)를 제정하는 과정을 지원함
 -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은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주민자치회 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자치사업(주민세, 참여예산, 특별회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 상당액 활용, 읍면동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등이 있음
 - 또한, 자치재원 규모를 확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지자체 협업 및 사례 전파 등의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임
-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주민자치 민·관·학 정책 공론장 운영을 지원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지원사업 계획이 2021년 추진단 계획에 반영됨
 - 온·오프라인 사례 공유, 정책 방향 등의 이슈별 포럼(3회)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4개 분야에 9~10개의 추진과제가 연도별로 진행이 되었으며, 연도가 거듭됨에 따라 추진과제가 종료 및 새롭게 신설 추진되어 왔음. 본 3절에서는 2021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정리하였음

- 전국 권역별 주민자치 현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현장 경험 기반의 소규모 연구보고서 제작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운영 혁신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내외부공모), 담당자 전문직위제 운영 지원
- 2021년 추진단 계획상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 재원확충 방안, 공론장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등이 예정되어 있음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주민자치 관련 민간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 활성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추진됨
- 2021년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 주민자치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등이 아래와 같이 진행됨
 - 시도·시군구 공무원 교육(상반기 권역별 설명회 등 2회)
 - 읍면동 담당자 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계 교육(1회)
 - 주민자치회 회장 등 임원 교육(1회)
-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주민자치 민·관 전문인력 양성 -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사업은 아래의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20개팀(1개팀-민간인 2명, 공무원 2명)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21개팀 총 84명의 규모로 운영하였음
 - 시군구청장협의회·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 주최
 - 과제 수행형 워크숍 방식 교육(전문 코칭단 운영)
-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이 추진됨
 -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
 - 자치단체별 수석컨설턴트 지정·교육을 통한 책임성 강화

* 2019년 자치단체 25개, 2020년 26개, 수석컨설턴트 12명 운영

- 2021년 11월까지 주민자치 민관 교육,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양성 교육,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운영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방향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재도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주민자치 중심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고도화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심화된 지역현황조사와 지역의제조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읍면동 비전 및 3개년 이상의 동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과제를 통해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구축의 일환으로 법인에 관한 주민 대상 교육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법인 설립(신규) 또는 고도화(기설립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위탁 또는 수탁사업을 지자체 자체로 발굴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
- 2021년에는 11월까지 주민자치 고도화 대상지 선정 및 합동워크숍 및 컨설팅 운영, 공모사업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지원함

2.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주민참여 기반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과의 연계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임

-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행정안전부 협력형으로 별도 선정하여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를 통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함
 - 개소당 0.5~2억 원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18년 4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9개소, 2021년 6개소 등 현재까지 총 28개소에 예비사업이 진행되어 옴
-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사업 중 지역특화유형을 별도로 운영하여 특히 인구감소 지역 내 공공생활서비스를 중심지와 주변지로 재구성하고, 주민참여기반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
 - 2019년 2개소, 2020년 1개소, 2021년 2개소 등 현재까지 총 5개소에 사업이 진행되어 옴
- 국토교통부 사업 이외에도 각 부처별 공모사업에 주민자치회를 연계하는 경우 공모선정 가점을 부여하여 주민참여 기반 정책을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 (교육부) 미래형교육자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등
- 예비사업 공모 및 평가·선정은 지난 2020년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관련 사업의 워크숍 및 예산교부 등이 2021년 2월 진행되어 사업 운영 중에 있음
-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은 지난 2020년 10월까지 공모 및 평가가 이루어져, 2021년 11월 도시재생특위가 선정되어 운영될 예정임
- 중앙부처 연계사업은 연계사업 발굴 및 협의가 2021년 연중 진행될 예정임

□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

-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락 등 지역의 복잡·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중앙주도의 단일부처 하향식 지역사업 방식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기금, 기업 등의 지역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협력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자치 기반의 민관협력 확대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성화의 융합적 협력을 위해 5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가 MOU를 체결하여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고도화 추진, 2019년 기 선정된 시범사업지(경북 의성군, 청도군) 중 사업의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한 모델화 적합지 1곳을 선정·지원함
 - MOU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이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 및 부처간 협업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대표협의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2019년 행안부-교육부 협업을 통해 교육부 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선정지역에서 자치·교육 연계를 위해 '주민자치회 내 교육분과' 설치를 협의함
- 소지역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소지역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를 위해 민간지원단체 주도형 사업 또한 진행 중에 있음
 - 민간지원단체 추천에 의한 MOU 기관(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SR임팩트)을 공동선정하여 공동의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협력하여 같이 해결할 민·관 지역주체 간 MOU 체결을 지원함
 - 지역주체 발굴 및 모집, 지역의제 찾기, 지역자원조사 등 지역계획수립에 필요한 컨설턴트 선정 및 지원, 지역의제 실행을 위한 민간기금 및 공모사업 연계를 진행함
- 한편 4개 유관단체(시군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위, 균형발전위, 행안부)와 연계사업을 통해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자치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지역혁신을 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치단체와 민간 활동가 통합 역량 강화 교육 운영하고, 연간 지속 교육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 지역에서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부처별 정책은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성과를 보이는데 한계점이

나타났으며, 정부의 지역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역량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지역의 부처 간 사업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정책효과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신규사업으로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5부처 MOU 기반 사업 연계로 시너지 효과가 큰 소(小)지역을 선정하여 상향식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부처는 지원 가능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자치·돌봄·재생·교육 등 부처 지역사업의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해 행안부·교육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5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함 (2020.3월)
- 이를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사업 추진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주민 및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보완하게 되며, 지역 현황, 부처 정책, 주민 의견 등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을 수립함
- 또한, 지역이슈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중앙·지방정책협의체, 지역민관합동협의체, 주민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며, 다부처 협력사업 추진기반 확산을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 매뉴얼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과 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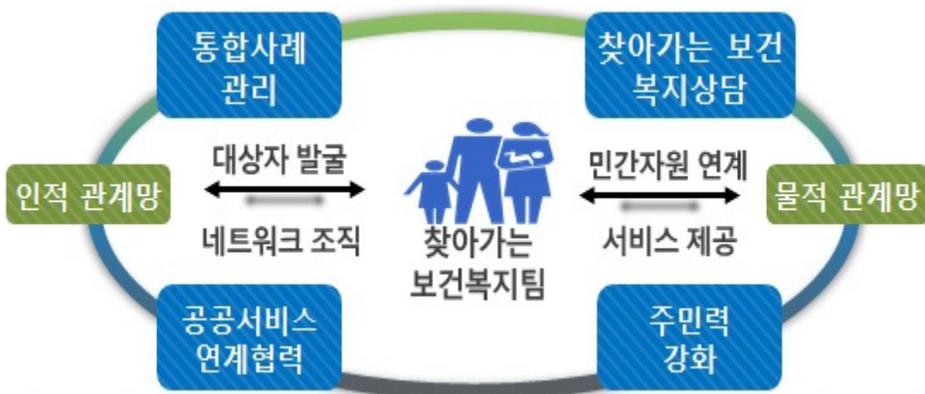
3.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민 생활에 밀착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기존의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에 복지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나타났음

- 이를 위해, 전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복지·건강(보건) 등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출산·양육 가구 등으로 방문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고용 등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2-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념도



자료: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020),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중 중심동에만 전담팀을 설치하는 권역형 지역은 개별 읍면동인 일반동에 전담팀을 설치하는 기본형(복지 3명, 간호 1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인력확충에 따라 방문대상 확대 등 심화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읍면동에 복지서비스에 건강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관리 등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읍면동과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과의 업무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 분절화된 사업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주민 관점에서 지역 내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민·관 협력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사업은 “협업체계 구축 및 문제의식 공유 → 지역의제 선정 →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 사업 수행 →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로 추진함
- 이와 더불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통해 25개 내외 시군구를 선정함
 - 주요 연계·협력 추진 사업은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생산 및 연계” 등이 있음
- 사업은 2021년 2월까지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을 신청접수 및 선정하고, 11월까지 지자체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단 구성 및 운영하며, 사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12월에는 진행된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임

□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주민들의 복합적 복지 욕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공적영역 특히 행정기관 중심의 문제해결에 한계점이 있으며, 지역의 복합적인 문제를 주민과 함께 예방·해결하는 체계 구축 및 새로운 사회자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음

- 여기서 말하는 주민력이란, 공공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함
-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이 있음
-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을 위해 주민들이 지역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포함됨
 - 행정적 지원의 내용으로는 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공동체, 돌봄, 사회적 자원 등 관련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것을 독려하고,
 - 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과 주민생활 속 소통·돌봄 공간 확보로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또한, 마을복지 선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사업과 연계한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체 기능 강화 및 마을복지 사업모델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인돌봄과 연계된 마을복지의제 발굴, 주민-민간 단체-전문가로 구성된 마을복지계획단 운영,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한 노인돌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4.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선

-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돌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인의료·요양비 또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비용효율적 노인의료·돌봄체계가 미비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발생하는 등 노인의료비의 지속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공급기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이로 인해 수요-공급 불일치, 시설 의존, 돌봄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노인 돌봄에 필요한 요양·의료·주거·생활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위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음(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4〉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 | |
|----------|-------------------|---|
| 보건의료 서비스 | ICT 방문건강 관리사업 | • AI·IOT 기반으로 어르신 바이탈사인 수집과 건강상담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병원진료와 연계하는 케어서비스 |
| | 방문진료 사업 | • 거동불편 등으로 병의원 이용 곤란 시 왕진서비스 연계 |
| | 만성질환 관리 | •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제공 |
| | 퇴원환자 관리 | • 요양병원 퇴원 시 돌봄본부와 연계, 통합적인 재가 서비스 제공 |
| 요양 서비스 | 정기순회 수시대응형 재가 서비스 | • 요양보호사와 이용자를 한 그룹으로 묶어 이용자별 필요시간에 대응하는 방식의 순회 서비스 |
| | 통합재가 서비스 | •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 | 기능회복 서비스 | • 주야간보호기관에 이용자의 기능회복 강화를 위해 물리(작업)치료사 배치 |
| 생활지원 서비스 | 이동 지원 | •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외출활동 차량 지원 |
| | 동행 지원 | •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외출활동 동행 지원 |
| | 식생활 지원 | • 건강상태별 맞춤식사, 도시락 및 밀반찬배달 |
| | 일시재가 서비스 | • 급성기병원 퇴원 이후 장기요양 등급인정 받기 전 재가 서비스 제공 |
| 주거복지 서비스 | 주택개조 | • 고령자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
| | 지원주택 | • LH와 협의를 통해 노인돌봄주택 등 확보 |

자료: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020),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21년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22년에 전 지자체 확산 모델 완성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음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신규사업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어 온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다부처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함

제3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식조사 및 평가

● 제1절 조사 설계

● 제2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식조사 및 평가

● 제3절 평가결과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조사 설계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 정책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각 분야 10명 내외
 -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 및 주민자치(지방자치) 관련 연구자 및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 지역복지 및 주민자치 활동가 10명 내외
- 샘플크기: 각 분야별 30명 내외
- 조사방법: 표준화된 질문지에 온라인 응답 또는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
- 표본추출방법: 각 분야 전문가 응답 의뢰
- 조사기간: 2020. 6. 17. ~ 6. 23.(7일간)
- 조사 응답 및 분석: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및 학계, 지원기관 종사자 등) 명단 사전 확보 후 개별 의뢰 및 분석

□ 조사방법 및 대상

-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책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 정성평가, 통계적 지표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기법과 무작위 표본, 정책 참여자 대상, 전문가 대상 등 조사대상 또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주민자치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과 조사대상을 무작위 표본추출로 시행할 경우 정책사업 평가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각 분야의 전문가 (정책참여 공무원, 학계 및 현장활동가)로 설정하였음

- 또한, 각각의 분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주요 추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층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계층화 분석기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음
- AHP기법은 평가기준을 계층화하여 계층에 따라 중요도를 정해가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으로, 타당성조사 및 분석,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연구의 과정에서 정책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어, 평가의 효과성이 이미 검증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사 내용

- 주민자치 분야는 6개 주요사업과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표 3-1〉 주민자치분야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

| 분야 | 주요사업 | 세부사업 |
|----------|-------------------------|------------------|
| 주민 자치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
| | |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제정 |
| |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
| | | 주민자치활동 참여 보장 |
| | | 읍면동 행정운영 혁신 |
| | | 읍면동장 역할 강화 |
| | | 주민자치사업 재원 확충 |
| | | 주민자치 컨설팅 현장 지원 |
|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 | | 스마트 주민센터 구현 |
| | | 주민 생활자치 공간 조성 지원 |

| 분야 | 주요사업 | 세부사업 |
|-------------------|------------------------|--------------------------|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자치단체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
| | | 민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풀 구성 |
| | | 정책 수립 운영을 위한 컨설팅 추진 |
| | | 공론장 직접 지원 |
|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주민총회 역할 강화 |
| | | 주민자치회 실행법인 도입 지원 |
| | | 담당 조직 및 인력 확충 |
| | | 확충인력 유지관리 및 역량강화 |
| |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 | 주민총회 결정 사항 관련부처 사업연계 |
| | | 주민참여 내실화 |
| | | 자치계획 지원 강화 |
| | 시책사업을 통한 특화 마을모델 창출 | 사업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공 |
| | | 시범사업지역 모니터링 및 컨설팅 |
| | | 특화 마을모델 발굴 |
|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 지역사업 정보 집약 및 체계화 |
| 주민자치 콘텐츠 아카이빙 | | |
|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
| 부처 지역사업 자료집 제작 | | |

○ 보건복지 분야는 4개 주요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표 3-2〉 보건복지 분야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

| 분야 | 주요사업 | 세부사업 |
|----------|----------------------------------|----------------------------|
| 보건 복지 |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 |
| | |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인력 확충 |
| | | 관련 부처 공공서비스 연계 및 통합 |
| | |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읍면동 인력조직 모델 설계 |
| |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 지역별 연계모델 발굴 및 확산 |
| | | 주민참여 민관협력 활성화 |
| | | 지역복지력 강화 지원(교육 컨설팅 등) |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서비스 대상 및 범위 확대 |
| | | 보건 복지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강화 |
| | | 읍면동 전담팀 및 건강서비스팀 신설 |
| |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추가 |
| | | 담당인력 교육훈련 강화 |
|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및 주민력 강화 | 주민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연계 |
| | | 연계 강화 관련 공모사업 추진 |
| | | 마을복지계획 수립 시행 |
| | |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
| | |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 | | 자발적 주민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다부처 사업은 1개 주요사업과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 전문가와 주민자치 전문가 공통으로 조사된 항목임

〈표 3-3〉 다부처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

| 분야 | 주요사업 | 세부사업 |
|-----------|---------------------------|---------------------|
| 다부처 사업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및 민관협력 확대 | 국토부 소규모 재생 연계 |
| | |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
| | | 다부처 MOU체결 |
| | | 민간지원단체 주도형 사업 추진 |
| | |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 |
| | | 민관 협의기구 운영 |

- 위의 사업을 종합하여, 각각의 주요사업과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의 공통된 내용을 추진분야로 재분류하여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사업추진과 목적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을 설계하였음

〈표 3-4〉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추진분야 재분류

| 주민자치 | 보건복지 |
|----------------------|---------------------------|
| 읍면동 현장인력의 확충 | 지자체 보건복지 인력확충 |
| 주민자치회의 확산 | 시군구·읍면동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
| 읍면동(지역, 마을단위) 중심의 사업 | 시군구·읍면동 복지 + 건강 기능 강화 |
| 읍면동 행정혁신 |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 |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
| 기초지자체의 종합적 기획역량 증대 | 주민력 강화 지원 |
|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 강화 | 부처 간 연계 활성화(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
| 정부 부처 간 사업연계 활성화 | |

- 사업의 영향력과 함께, 사업 추진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지역주민의 참여율 등)과 추진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예산, 행정적 지원, 사업 홍보)을 종합하여 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배치하였음

- 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추진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추진단의 조직과 예산규모에 대한 조사와 추진단이 가진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점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추진단의 역할과 지원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음

제2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식조사 및 평가

1. 인식조사 및 평가의 개요

- 표본 수: 총 79명
- 분야별 표본 수: 주민자치 46명, 보건복지 33명
- 응답자 수: 주민자치 29명, 보건복지 24명(유효응답율 각 63.0%, 72.7%)
- 응답자 평균 업무 경력: 주민자치 10.7년, 보건복지 13.5년

□ 통계적 유의성 검토

- 통계학의 중심극한정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표본이 30개 이상인 표본분포에서 정규 분포에 근사하여 표본과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근사치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조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주민자치 29명, 보건복지 24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표본 크기를 갖고 있어 평가결과 분석 이전에 응답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리커트 척도인 5점 척도로 제시된 문항의 유효성, 즉 5점 척도의 응답이 정규분포 함수에서 1과 5사이로 응답될 확률을 검토하였음

〈표 3-5〉 분야별 표본의 유효응답 확률

| 문항 | 유효응답 확률(%) | 문항 | 유효응답 확률(%) |
|------------|------------|------------|------------|
| 주민자치-문11 | 84.09 | 보건복지-문12 | 91.00 |
| 주민자치-문12-1 | 95.49 | 보건복지-문13-1 | 83.84 |
| 주민자치-문12-2 | 87.64 | 보건복지-문13-2 | 92.30 |
| 주민자치-문12-3 | 93.98 | 보건복지-문13-3 | 95.33 |
| 주민자치-문12-4 | 93.86 | 보건복지-문13-4 | 95.45 |
| 주민자치-문12-5 | 98.55 | 보건복지-문13-5 | 90.61 |
| 주민자치-문12-6 | 98.74 | 보건복지-문13-6 | 89.17 |
| 주민자치-문12-7 | 96.21 | 보건복지-문13-7 | 94.05 |
| 주민자치-문12-8 | 95.06 | 보건복지-문16 | 98.04 |
| 주민자치-문15 | 95.11 | 보건복지-문17 | 92.42 |
| 주민자치-문16 | 93.37 | | |
| 주민자치 평균 | 93.83 | 보건복지-평균 | 92.22 |

- 위의 표에서 주민자치 분야의 리커트 척도의 응답은 93.83%의 확률로 유효 응답이 관찰되었으며, 보건복지 분야는 92.22%로 관찰되었음
- 두 집단의 표본 수(각각 29명, 24명)를 감안했을 때, 표본의 응답은 93% 가량의 높은 확률로 정규분포를 가진 유효한 응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5점 척도로 제시된 문항을 분야별로 나누어 널리 알려진 신뢰도 검증 방법인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응답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음
 - 크론바흐-알파 계수는 Cronbach(1951)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여러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ρ_T 로 표기하며 아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rho_T = \frac{k}{k-1} \left(1 - \frac{\sum_{i=1}^k \sigma^2_i}{\sigma^2_x} \right)$$

- 여기서, k 는 항목의 수, σ^2_i 는 i 번째 항목의 분산, 각 항목의 점수의 합을 $\sum_{i=1}^k X_i$, 그 분산을 σ^2_x 으로 표기함
-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인 경우 응답을 완전하게 신뢰, 0인 경우 응답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신뢰도 수준에 대한 고찰은 Nunnally(1967)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6〉 Nunnally의 신뢰도 수준 권고 값

| 구분 | 신뢰도 수준 권고 값 | |
|--|----------------|--|
| | Nunnally(1967) | Nunnally(1978) Nunnally&Bernstein(1994) |
| 초기 연구 (Early stage of research) | 0.5 또는 0.6 | 0.7 |
| 응용 연구 (Applied research) | 0.8 | 0.8 |
| 중요 결정 시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 0.95(최소 0.9) | 0.95(최소 0.9) |

-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조은성(2020)은 Nunnally의 권고 값들은 단지 권고 수준일 뿐 절대적인 기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권고 값 부근의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 리커트 척도 문항의 분야별 신뢰도 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7〉 리커트 척도 문항의 분야별 신뢰도 수준

| 구분 | 주민자치 | 보건복지 |
|---|-------|-------|
| 크론바흐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 ρ_T) | 0.683 | 0.641 |

- 신뢰도 수준은 주민자치 분야에서 0.683, 보건복지에서 0.641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시작 이후 첫 번째 평가연구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초기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 응답의 신뢰도가 비교적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적은 표본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유효확률과 신뢰도 수준 모두 유효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고, 응답의 분석과 그 결과의 해석에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3-8〉 응답자의 성별 분포

| 구분 | | 응답 수 | 비율(%) |
|----|------|------|------------|
| 성별 | 주민자치 | 여성 | 5 9.4 |
| | | 남성 | 24 45.3 |
| | 보건복지 | 여성 | 11 20.8 |
| | | 남성 | 13 24.5 |
| 계 | | 53 | 100.00 |

- 응답자의 성별은 두 분야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주민자치 분야 응답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응답자의 연령 분포

| 구분 | | 응답 수 | 비율(%) |
|-----|------|----------|------------|
| 연령대 | 주민자치 | 만 20세 미만 | 0 0.0 |
| | | 만 20~29세 | 0 0.0 |
| | | 만 30~39세 | 2 3.8 |
| | | 만 40~49세 | 12 22.6 |
| | | 만 50~59세 | 9 17.0 |
| | | 만 60~69세 | 6 11.3 |
| | | 만 70~79세 | 0 0.0 |
| | | 만 80세 이상 | 0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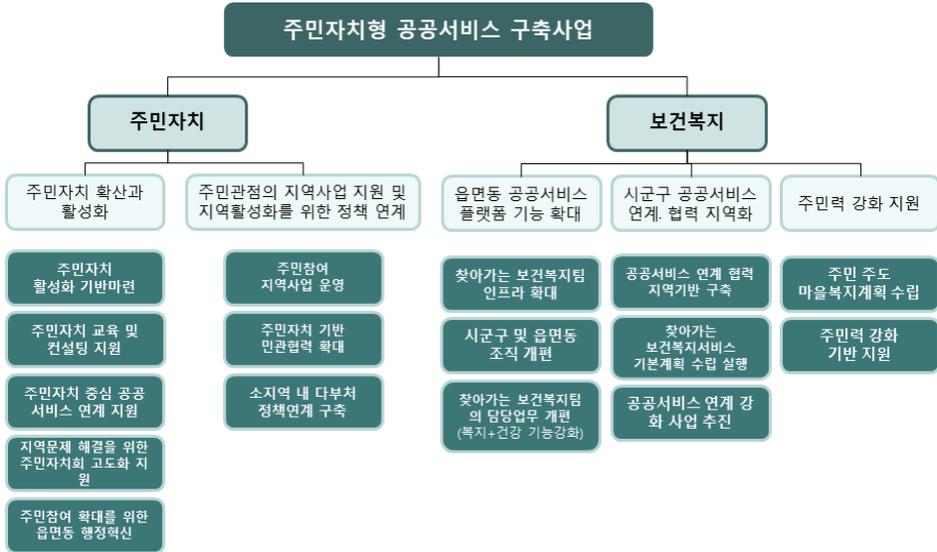
| 구분 | | 응답 수 | 비율(%) |
|------|----------|------|-------|
| 보건복지 | 만 20세 미만 | 0 | 0.0 |
| | 만 20~29세 | 0 | 0.0 |
| | 만 30~39세 | 2 | 3.8 |
| | 만 40~49세 | 11 | 20.8 |
| | 만 50~59세 | 9 | 17.0 |
| | 만 60~69세 | 2 | 3.8 |
| | 만 70~79세 | 0 | 0.0 |
| | 만 80세 이상 | 0 | 0.0 |
| 계 | | 53 | 100.0 |

- 응답자의 연령은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모두 대부분의 응답자가 만 40세에서 만 59세 사이에 분포하였음. 이는 응답자의 평균 업무경력이 주민자치 10.7년, 보건복지 13.5년으로 산출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경력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계층화

- 사업의 평가 및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었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각 연도별 사업을 종합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층화 과정을 수행하였음
- 주민자치 분야는 2개의 대분야와 8개의 세부분야로 구분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는 3개의 대분야와 8개의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 대해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각 대분야 간, 세부분야 간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음
-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간의 쌍대비교 분석은 제외하였음

〈그림 3-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계층화



2.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별 조사 및 평가결과

□ 주민자치 분야

○ 주민자치 분야 사업의 중요도(대분야)

- 주민자치 분야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분야별 중요도가 나타났음

〈표 3-10〉 주민자치 분야 사업의 중요도(대분야)

|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 1] |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 [분야 2] | CI |
|------------------------|--|----|
| 0.6253 | 0.3747 | 0 |

- 사업 분야의 중요도는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일관된 답변 정도를 나타내는 일치성지수³⁾(CI, Consistency Index)는 쌍대비교 항목이 1개인 관계로 0으로 나타났음

○ [분야 1]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

-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부사업별 중요도가 나타났음

〈표 3-11〉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CI |
|----------------------|------------------------|---------------------------|-----------------------------------|-------------------------------|--------|
| 0.3159 | 0.1586 | 0.1707 | 0.1795 | 0.1754 | 0.0098 |

- 세부사업별 중요도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일관된 답변 정도를 나타내는 일치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는 0.0098로 매우 일관된 답변이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음

○ [분야 2]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 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

-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 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부사업별 중요도가 나타났음

3) 일치성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답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0.1 이하의 값이면 응답자의 답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표 3-12〉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 분야 세부사업의 중요도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 CI |
|--------------|-----------------|-------------------|--------|
| 0.2926 | 0.4265 | 0.2809 | 0.0008 |

- 세부사업별 중요도는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일관된 답변 정도를 나타내는 일치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는 0.0008로 매우 일관된 답변이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음

○ 주민자치 분야 활성화와 발전 기여도

- 행정안전부의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사업이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70%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도 3.97점으로 사업이 주민자치 분야의 활성화와 발전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13〉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사업이 주민자치분야에 기여하는 정도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00 |
| 그렇지 않다 | 4 | 13.79 |
| 보통 | 3 | 10.34 |
| 그렇다 | 12 | 41.38 |
| 매우 그렇다 | 10 | 34.48 |
| 계 | 29 |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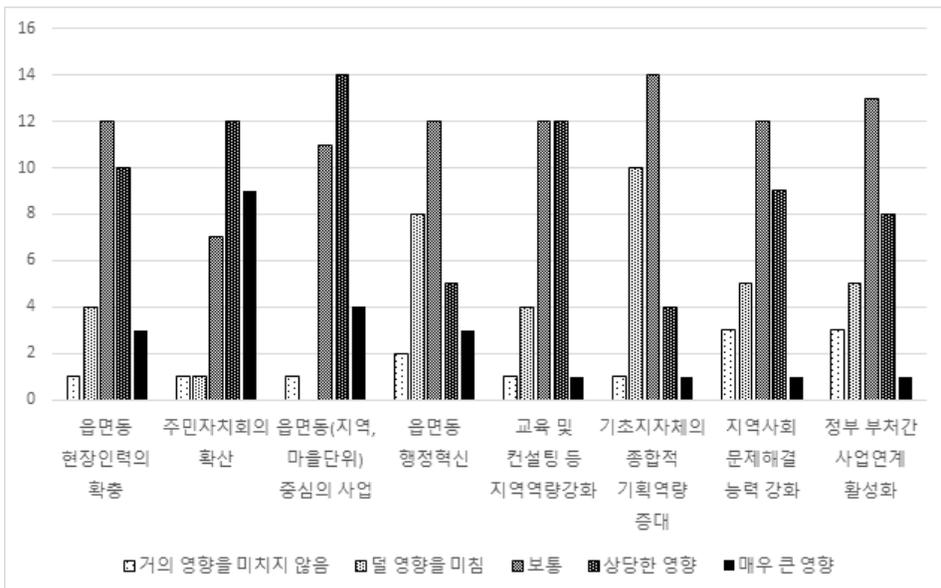
○ 사업추진 및 목적 달성의 영향도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분야가 주민자치 사업의 추진과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확산 분야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분야별 영향력

| 구분 |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비교적 영향을 덜 미침 | 보통 | 상당히 영향을 미침 |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5점 척도 기준 평균 |
|-----------------------------|---------------|--------------|----------|------------|-------------|-------------|
| 읍면동 현장인력의 확충 | 1 | 4 | 12 | 10 | 3 | 3.33 |
| 주민자치회의 확산 | 1 | 1 | 7 | 12 | 9 | 3.90 |
| 읍면동(지역, 마을단위) 중심의 사업 | 1 | 0 | 11 | 14 | 4 | 3.67 |
| 읍면동 행정혁신 | 2 | 8 | 12 | 5 | 3 | 2.97 |
|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 | 1 | 4 | 12 | 12 | 1 | 3.27 |
| 기초지자체의 종합적 기획역량 증대 | 1 | 10 | 14 | 4 | 1 | 2.80 |
|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 강화 | 3 | 5 | 12 | 9 | 1 | 3.00 |
| 정부 부처 간 사업연계 활성화 | 3 | 5 | 13 | 8 | 1 | 2.97 |

〈그림 3-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분야별 영향력



- 그 뒤를 이어 읍면동 중심의 사업, 읍면동 현장인력의 확충, 지역 역량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 강화의 분야의 순으로 보통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정부 부처 간 사업연계 활성화, 읍면동 행정혁신, 기초지자체의 종합적 기획역량 증대 분야는 보통 미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특히 기초지자체의 종합적 기획역량 증대 분야는 가장 낮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사업 추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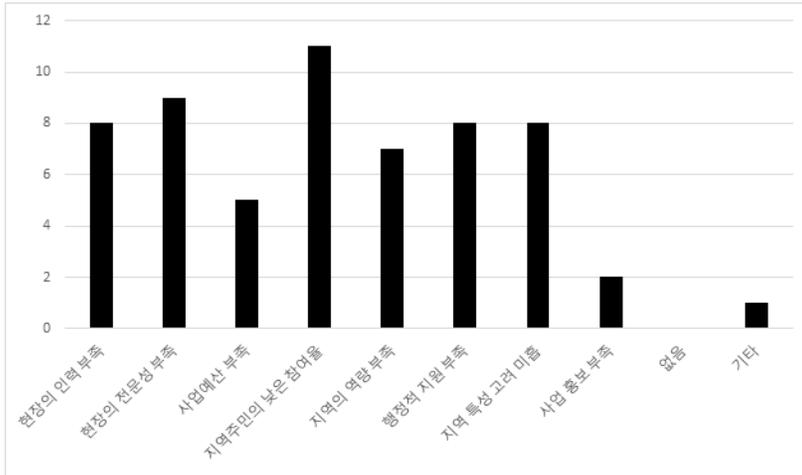
-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과 현장의 전문성 부족 순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현장의 인력 부족, 행정적 지원 부족, 지역 특성 고려 미흡, 지역의 역량 부족의 문제점 또한 8명 이상의 응답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표 3-15〉 사업 추진의 문제점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현장의 인력 부족 | 8 | 13.56 |
| 현장의 전문성 부족 | 9 | 15.25 |
| 사업예산 부족 | 5 | 8.47 |
|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 | 11 | 18.64 |
| 지역의 역량 부족 | 7 | 11.86 |
| 행정적 지원 부족 | 8 | 13.56 |
| 지역 특성 고려 미흡 | 8 | 13.56 |
| 사업 홍보 부족 | 2 | 3.39 |
| 없음 | 0 | 0.00 |
| 기타 | 1 | 1.69 |
| 계 | 59 | 100 |

* 최대 2개의 중복응답 가능

〈그림 3-3〉 사업 추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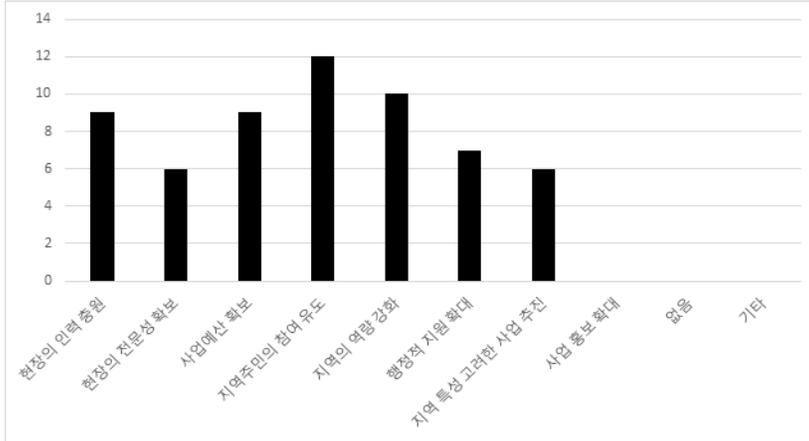
○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 및 지역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표 3-16〉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현장의 인력 총원 | 9 | 15.25 |
| 현장의 전문성 확보 | 6 | 10.17 |
| 사업예산 확보 | 9 | 15.25 |
|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12 | 20.34 |
| 지역의 역량 강화 | 10 | 16.95 |
| 행정적 지원 확대 | 7 | 11.86 |
| 지역 특성 고려한 사업 추진 | 6 | 10.17 |
| 사업 홍보 확대 | 0 | 0.00 |
| 없음 | 0 | 0.00 |
| 기타 | 0 | 0.00 |
| 계 | 59 | 100 |

〈그림 3-4〉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 현장의 인력 충원과 사업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9명(15%)으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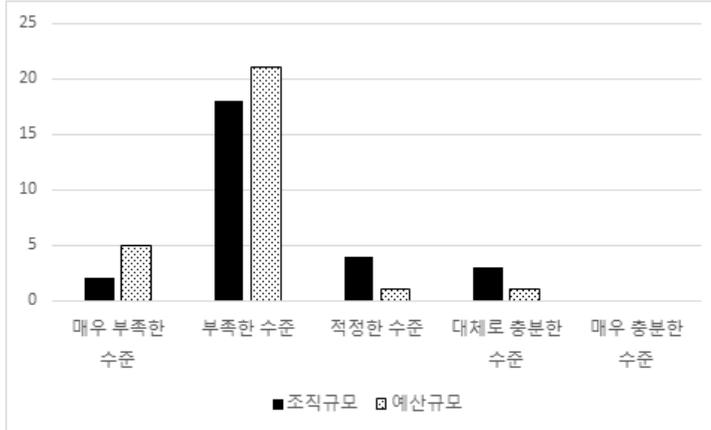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규모 및 예산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현재 조직규모 및 예산규모에 대해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직과 예산 모두 '부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표 3-17〉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구분 | 조직 규모 | | 예산 규모 | |
|---------------|-----------|--------------|-----------|--------------|
|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 매우 부족한 수준 | 2 | 7.41 | 5 | 18.52 |
| 부족한 수준 | 18 | 66.67 | 21 | 77.78 |
| 적정한 수준 | 4 | 14.81 | 1 | 3.70 |
| 대체로 충분한 수준 | 3 | 11.11 | 1 | 3.70 |
| 매우 충분한 수준 | 0 | 0.00 | 0 | 0.00 |
| 계 | 27 | 100.00 | 28 | 100.00 |
| 5점 척도 기준 평균 | 2.29 | | 1.93 | |

〈그림 3-5〉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특히, 추진단의 조직규모보다는 예산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5점 척도 기준으로 조직규모는 2.29점으로 부족에서 적절한 수준 사이였으나, 예산규모는 1.93점으로 상당히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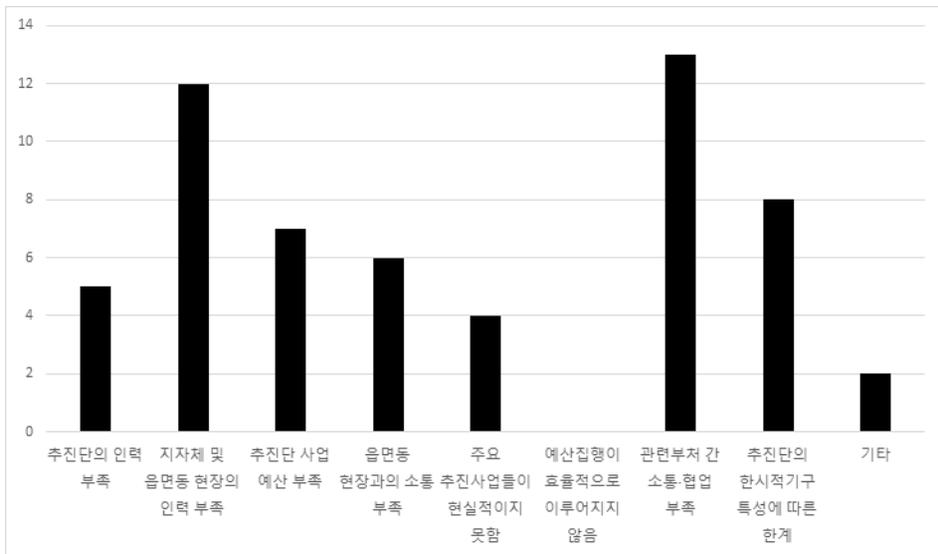
- 추진단의 운영체계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련부처 간 소통 및 협업 부족,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부족 순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표 3-18〉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추진단의 인력부족 | 5 | 8.77 |
|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부족 | 12 | 21.05 |
| 추진단 사업 예산 부족 | 7 | 12.28 |
|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부족 | 6 | 10.53 |
| 주요 추진사업들이 현실적이지 못함 | 4 | 7.02 |
|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0 | 0.00 |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관련부처 간 소통·협업 부족 | 13 | 22.81 |
| 추진단의 한시적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 | 8 | 14.04 |
| 기타 | 2 | 3.51 |
| 계 | 57 | 100 |

〈그림 3-6〉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그 뒤로 추진단의 한시적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나머지 문제점들은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음
-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가 없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지자체 주민자치 인력 승인 후 전담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추진단의 운영체계 중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련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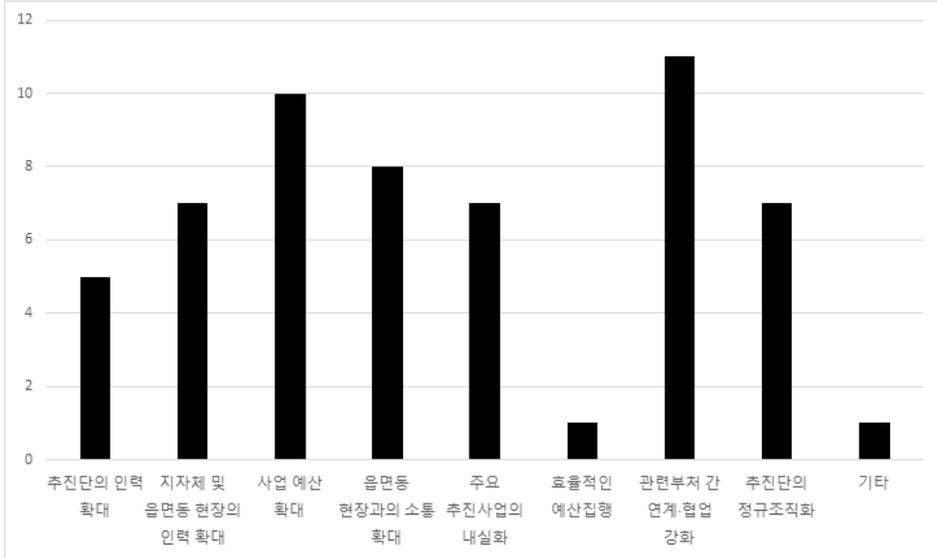
간 연계 및 협업 강화, 사업 예산의 확대 순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

〈표 3-19〉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추진단의 인력 확대 | 5 | 8.77 |
|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확대 | 7 | 12.28 |
| 사업 예산 확대 | 10 | 17.54 |
|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확대 | 8 | 14.04 |
| 주요 추진사업의 내실화 | 7 | 12.28 |
| 효율적인 예산집행 | 1 | 1.75 |
|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 | 11 | 19.30 |
| 추진단의 정규조직화 | 7 | 12.28 |
| 기타 | 1 | 1.75 |
| 계 | 57 | 100.00 |

-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확대, 현장의 인력 확대, 추진사업의 내실화, 추진단의 정규조직화 등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보완점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1명으로 낮게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림 3-7〉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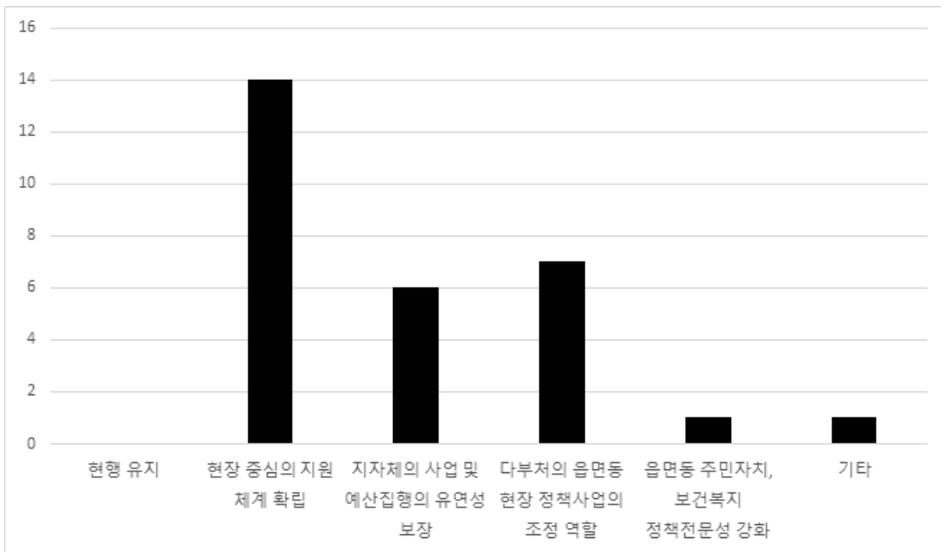
- 추진단이 지방자치단체(읍면동)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장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이 가장 필요한 역할 및 지원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표 3-20〉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현행 유지 | 0 | 0.00 |
|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 | 14 | 48.28 |
|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 보장 | 6 | 20.69 |
|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 | 7 | 24.14 |
|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정책전문성 강화 | 1 | 3.45 |
| 기타 | 1 | 3.45 |
| 계 | 29 | 100.00 |

-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4% 가량 있었으며,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20% 가량 있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림 3-8〉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보건복지 분야

○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중요도(대분야)

-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분야별 중요도가 나타났음

〈표 3-21〉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중요도(대분야)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 1]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분야 2] | 주민력 강화 지원 [분야 3] | CI |
|----------------------------|----------------------------|------------------|--------|
| 0.3373 | 0.3036 | 0.3591 | 0.0005 |

- 사업 분야의 중요도는 주민력 강화 지원,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세 분야 모두 0.3 내외의 상대적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어 어느 한 분야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응답으로 볼 수는 없음
- 응답자의 일관된 답변 정도를 나타내는 일치성지수(4)CI, Consistency Index)는 0.000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답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야 1]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 중요도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부사업별 중요도가 나타났음

〈표 3-22〉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 중요도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 (복지+건강 기능강화) | CI |
|-------------------|-----------------|----------------------------------|--------|
| 0.4119 | 0.2881 | 0.3000 | 0.0195 |

- 세부사업별 중요도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업무 개편,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일관된 답변 정도를 나타내는 일치성지수(CI, Consistency

4) 일치성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응답자의 답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0.1 이하의 값이면 응답자의 답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Index)는 0.019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답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야 2]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의 세부사업 중요도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의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부사업별 중요도가 나타났음

〈표 3-23〉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의 세부사업 중요도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 |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 CI |
|---------------------|-------------------------|-------------------|--------|
| 0.4806 | 0.2348 | 0.2846 | 0.0005 |

- 세부사업별 중요도는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일관된 답변 정도를 나타내는 일치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는 0.000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답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분야 3] 주민력 강화 지원의 세부사업 중요도
 - 주민력 강화 지원의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세부사업별 중요도가 나타났음
 - 세부사업별 중요도는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3-24〉 주민력 강화 지원의 세부사업 중요도

|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 CI |
|-----------------|--------------|----|
| 0.4748 | 0.5252 | 0 |

- 응답자의 일관된 답변 정도를 나타내는 일치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는 쌍대비교 항목이 1개인 관계로 0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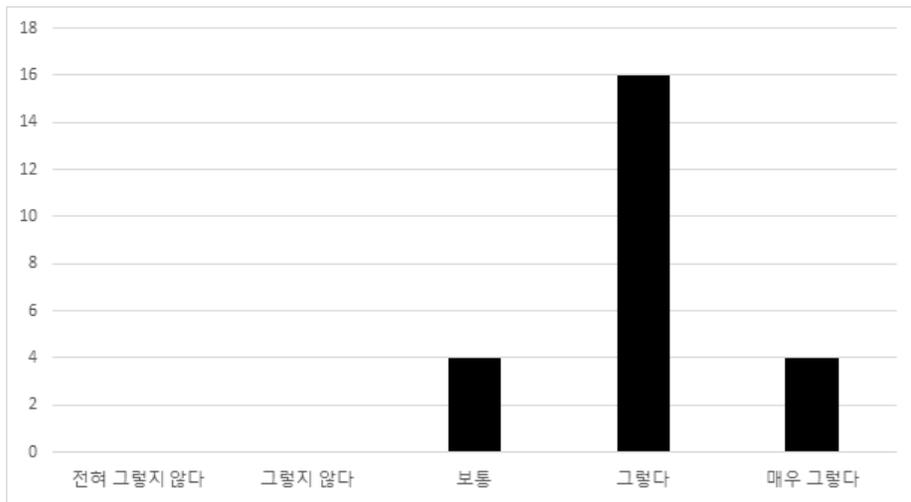
○ 보건복지 분야 활성화와 발전 기여도

- 행정안전부의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의 사업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목표 달성과 현장중심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도 4.00점으로 사업이 보건복지 분야의 활성화와 발전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25〉 보건복지 분야 활성화와 발전 기여도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전혀 그렇지 않다 | 0 | 0.00 |
| 그렇지 않다 | 0 | 0.00 |
| 보통 | 4 | 16.67 |
| 그렇다 | 16 | 66.67 |
| 매우 그렇다 | 4 | 16.67 |
| 계 | 24 | 100.00 |

〈그림 3-9〉 보건복지 분야 활성화와 발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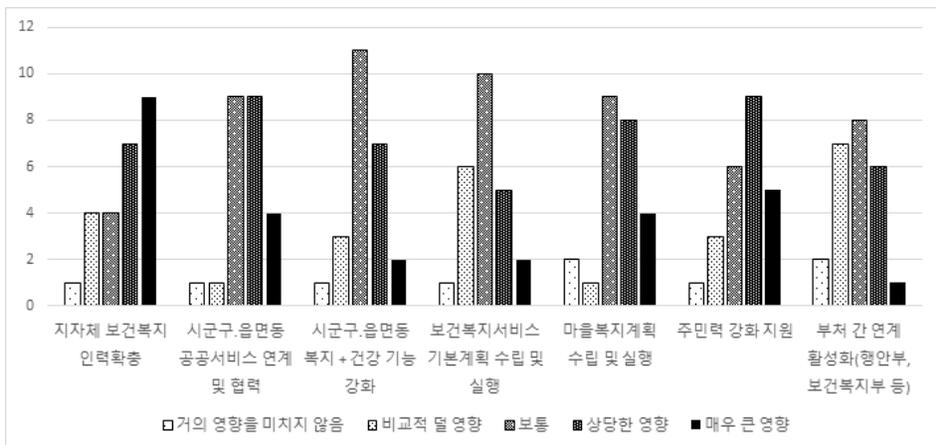
○ 사업추진 및 목적 달성의 영향도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분야가 보건복지 사업의 추진과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자체 보건복지 인력확충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6〉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분야별 영향력

| 구분 |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비교적 영향을 덜 미침 | 보통 | 상당히 영향을 미침 |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5점 척도 기준 평균 |
|---------------------------|---------------|--------------|----|------------|-------------|-------------|
| 지자체 보건복지 인력확충 | 1 | 4 | 4 | 7 | 9 | 3.76 |
| 시군구·읍면동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 1 | 1 | 9 | 9 | 4 | 3.58 |
| 시군구·읍면동 복지 + 건강 기능 강화 | 1 | 3 | 11 | 7 | 2 | 3.25 |
|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1 | 6 | 10 | 5 | 2 | 3.04 |
|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 2 | 1 | 9 | 8 | 4 | 3.46 |
| 주민력 강화 지원 | 1 | 3 | 6 | 9 | 5 | 3.58 |
| 부처 간 연계 활성화(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 2 | 7 | 8 | 6 | 1 | 2.88 |

〈그림 3-10〉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분야별 영향력



- 그 외에 부처 간 연계활성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보통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부처 간 연계 활성화는 비교적 적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추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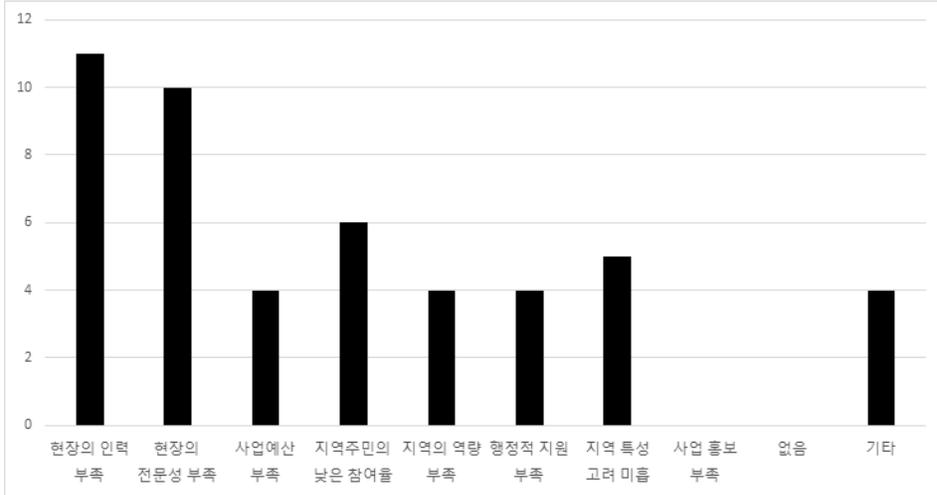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현장의 인력 부족과 현장의 전문성 부족 순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그 외에 사업 홍보 부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의 모호성’, ‘행정의 주민참여에 대한 이해부족’, ‘지자체 및 담당부서의 이해와 의지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표 3-27〉 사업 추진의 문제점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현장의 인력 부족 | 11 | 22.92 |
| 현장의 전문성 부족 | 10 | 20.83 |
| 사업예산 부족 | 4 | 8.33 |
|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 | 6 | 12.50 |
| 지역의 역량 부족 | 4 | 8.33 |
| 행정적 지원 부족 | 4 | 8.33 |
| 지역 특성 고려 미흡 | 5 | 10.42 |
| 사업 홍보 부족 | 0 | 0.00 |
| 없음 | 0 | 0.00 |
| 기타 | 4 | 8.33 |
| 계 | 48 | 100.00 |

* 최대 2개까지 중복응답

〈그림 3-11〉 사업 추진의 문제점



○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 현장의 인력 충원과 지역의 역량 강화 순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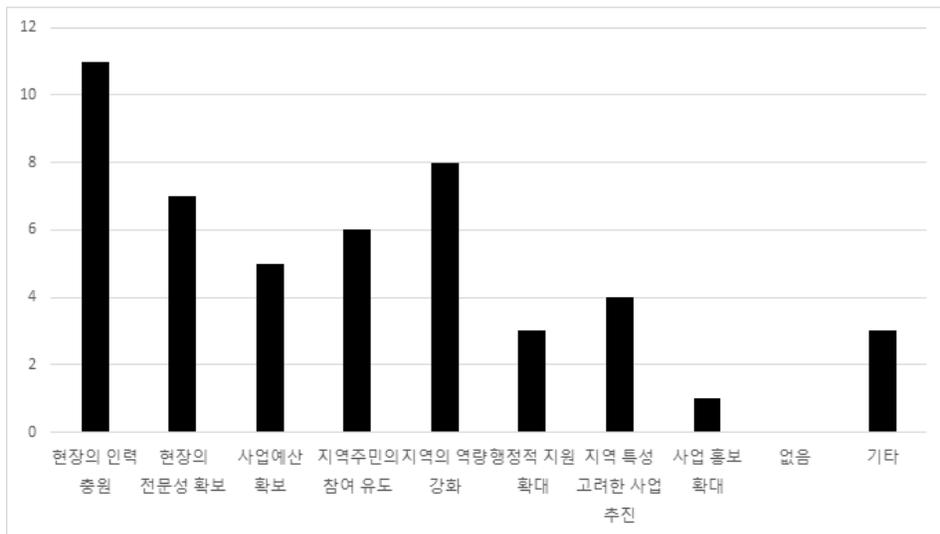
〈표 3-28〉 사업 추진의 개선할 점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현장의 인력 충원 | 11 | 22.92 |
| 현장의 전문성 확보 | 7 | 14.58 |
| 사업예산 확보 | 5 | 10.42 |
|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6 | 12.50 |
| 지역의 역량 강화 | 8 | 16.67 |
| 행정적 지원 확대 | 3 | 6.25 |
| 지역 특성 고려한 사업 추진 | 4 | 8.33 |
| 사업 홍보 확대 | 1 | 2.08 |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없음 | 0 | 0.00 |
| 기타 | 3 | 6.25 |
| 계 | 48 | 100.00 |

- 그 외에 사업 홍보 확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조사되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정합성 보완’, ‘공무원의 역량강화’, ‘시군구 담당부서 직원 교육’ 등 사업의 정교한 설계와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림 3-12〉 사업 추진의 개선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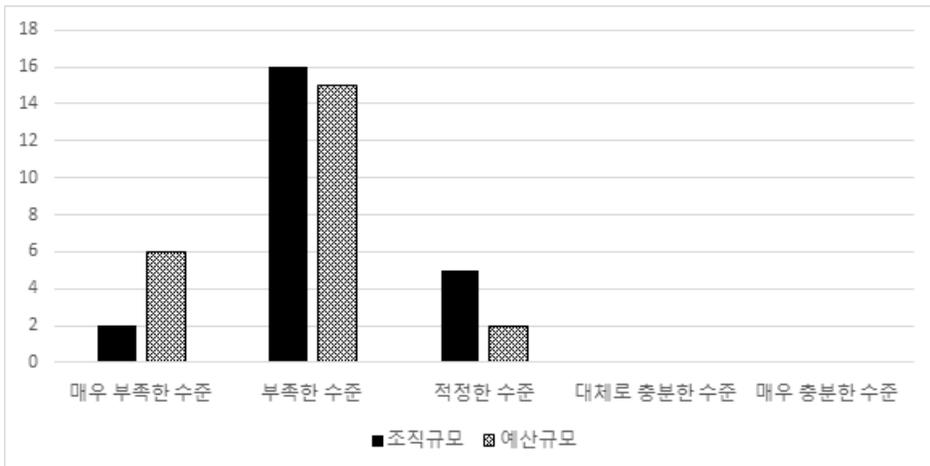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규모 및 예산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현재 조직규모 및 예산규모에 대해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직과 예산 모두 ‘부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표 3-29〉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구분 | 조직 규모 | | 예산 규모 | |
|---------------|-----------|--------------|-----------|--------------|
|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 매우 부족한 수준 | 2 | 8.70 | 6 | 26.09 |
| 부족한 수준 | 16 | 69.57 | 15 | 65.22 |
| 적정한 수준 | 5 | 21.74 | 2 | 8.70 |
| 대체로 충분한 수준 | 0 | 0.00 | 0 | 0.00 |
| 매우 충분한 수준 | 0 | 0.00 | 0 | 0.00 |
| 계 | 23 | 100.00 | 23 | 100.00 |
| 5점 척도 기준 평균 | 2.13 | | 1.83 | |

- 특히, 추진단의 조직규모보다는 예산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5점 척도 기준으로도 조직규모는 2.13점으로 부족에서 적정한 수준 사이였으나, 예산규모는 1.83점으로 상당히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 되었음



〈그림 3-13〉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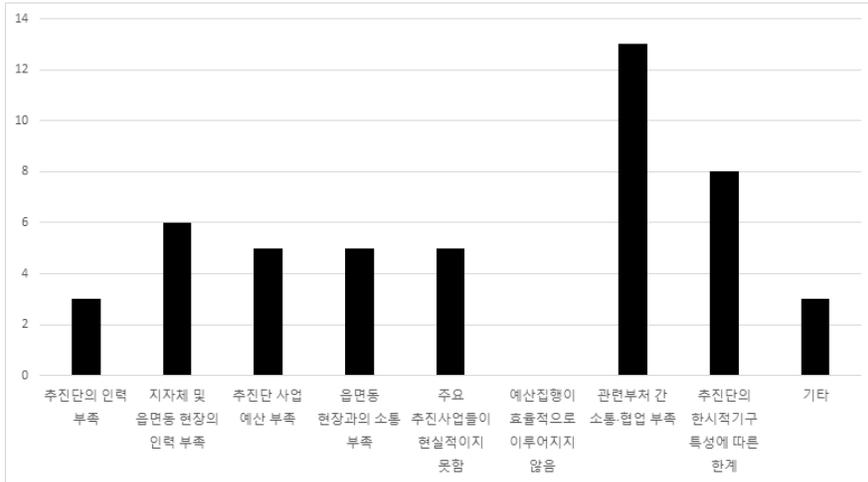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추진단의 운영체계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련부처 간 소통 및 협업 부족, 추진단의 한시적 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 순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추진단의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공동체,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 노인복지, 보육정책 등 다양한 유관 부서(과)와의 소통·협업이 중요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점들은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응답자가 없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추진단 하위에 현장 지원체계 부재’, ‘전문성 부족’, ‘인력의 임기제에 따른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표 3-30〉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추진단의 인력부족 | 3 | 6.25 |
|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부족 | 6 | 12.50 |
| 추진단 사업 예산 부족 | 5 | 10.42 |
|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부족 | 5 | 10.42 |
| 주요 추진사업들이 현실적이지 못함 | 5 | 10.42 |
|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0 | 0.00 |
| 관련부처 간 소통·협업 부족 | 13 | 27.08 |
| 추진단의 한시적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 | 8 | 16.67 |
| 기타 | 3 | 6.25 |
| 계 | 48 | 100.00 |

〈그림 3-14〉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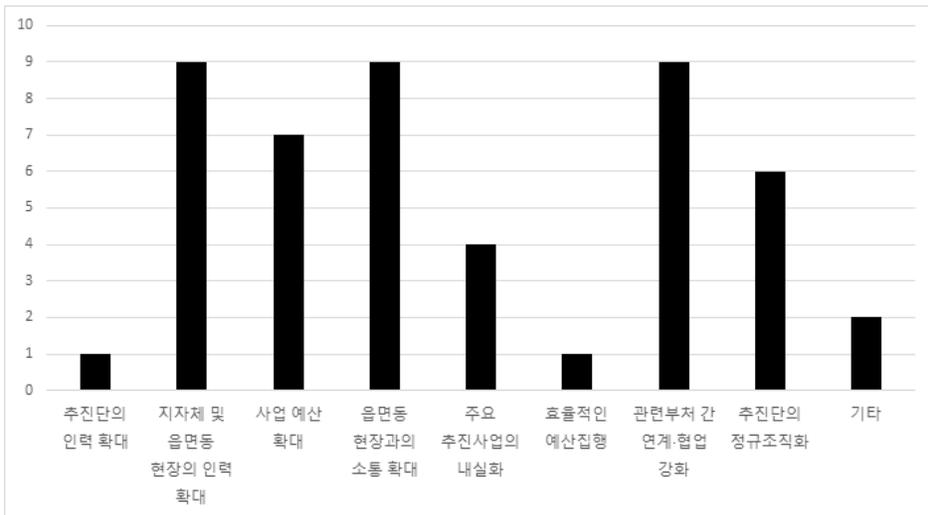
- 추진단의 운영체계 중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련부처 간 연계 및 협업 강화,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확대,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확대가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

〈표 3-31〉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추진단의 인력 확대 | 1 | 2.08 |
|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확대 | 9 | 18.75 |
| 사업 예산 확대 | 7 | 14.58 |
|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확대 | 9 | 18.75 |
| 주요 추진사업의 내실화 | 4 | 8.33 |
| 효율적인 예산집행 | 1 | 2.08 |
|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 | 9 | 18.75 |
| 추진단의 정규조직화 | 6 | 12.50 |
| 기타 | 2 | 4.17 |
| 계 | 48 | 100.00 |

- 지난 3~4년간 상당한 수준의 보건복지 관련 인력이 읍면동에 확충되면서 현장 복지 중심의 정책노력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력확대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읍면동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읍면동 공무원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취약계층의 증대 등과 맞물려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이는 읍면동의 주민조직 강화,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조직과 협력하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연계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예산 확대 및 추진단의 정규조직화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보완점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1명으로 낮게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추진단 하위에 지역별 현장지원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등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음

〈그림 3-15〉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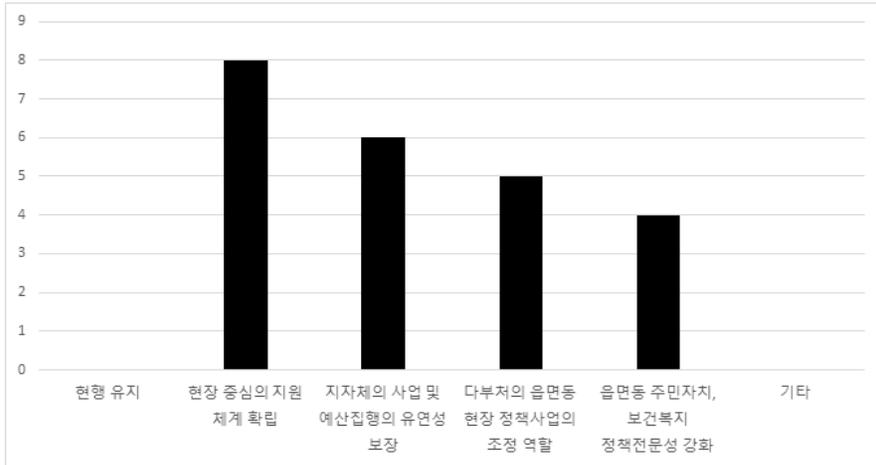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추진단이 지방자치단체(읍면동)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과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유지에 대한 응답은 0명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되었고, 현장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이 34.78%의 응답으로 가장 필요한 역할 및 지원 사항으로 조사되었음
-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26% 가량 있었으며,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1%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추진단의 역할과 지원사항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
- 기타 의견으로는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3-32〉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구분 | 응답 수 | 비율(%) |
|-------------------------|----------|--------------|
| 현행 유지 | 0 | 0.00 |
|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 | 8 | 34.78 |
|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 보장 | 6 | 26.09 |
|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 | 5 | 21.74 |
|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정책전문성 강화 | 4 | 17.39 |
| 기타 | 0 | 0.00 |
| 계 | 23 | 100.00 |

〈그림 3-16〉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3.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공통문항 분야 조사 및 평가결과

□ 분야별(주민자치, 보건복지) 공통 문항 응답 비교 및 종합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의 문제점

- 공통문항으로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두 분야 응답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사한 응답을 보였으나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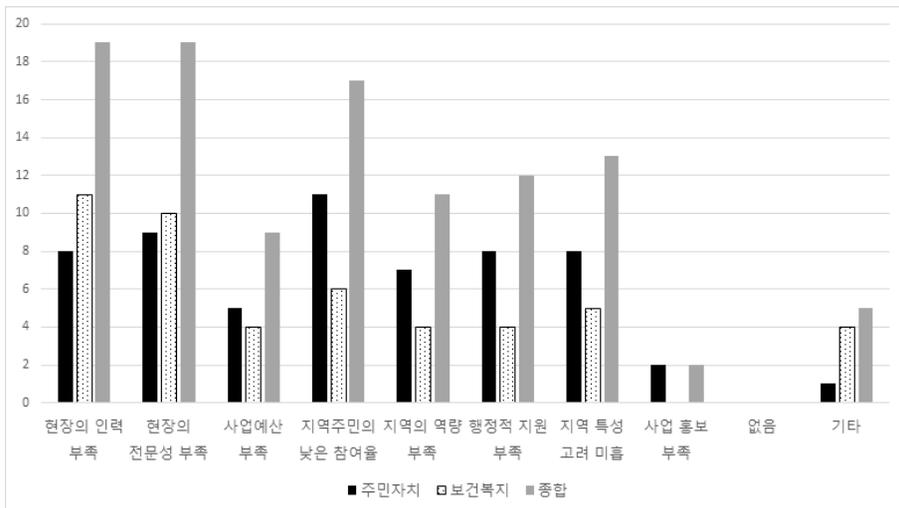
〈표 3-33〉 사업 추진의 문제점 분야별 비교

| 구분 | 주민자치 | | 보건복지 | | 종합 | |
|--------------|------|-------|------|-------|------|-------|
|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 현장의 인력 부족 | 8 | 13.56 | 11 | 22.92 | 19 | 17.76 |
| 현장의 전문성 부족 | 9 | 15.25 | 10 | 20.83 | 19 | 17.76 |
| 사업예산 부족 | 5 | 8.47 | 4 | 8.33 | 9 | 8.41 |
|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 | 11 | 18.64 | 6 | 12.50 | 17 | 15.89 |
| 지역의 역량 부족 | 7 | 11.86 | 4 | 8.33 | 11 | 10.28 |
| 행정적 지원 부족 | 8 | 13.56 | 4 | 8.33 | 12 | 11.21 |

| 구분 | 주민자치 | | 보건복지 | | 종합 | |
|-------------|------|-------|------|--------|------|--------|
|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 지역 특성 고려 미흡 | 8 | 13.56 | 5 | 10.42 | 13 | 12.15 |
| 사업 홍보 부족 | 2 | 3.39 | 0 | 0.00 | 2 | 1.87 |
| 없음 | 0 | 0.00 | 0 | 0.00 | 0 | 0.00 |
| 기타 | 1 | 1.69 | 4 | 8.33 | 5 | 4.67 |
| 계 | 59 | 100 | 48 | 100.00 | 107 | 100.00 |

-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을 응답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문제점으로 꼽았으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현장의 인력 부족을 응답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문제점으로 꼽았음
- 이러한 응답 결과는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사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이 읍면동 현장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현장의 전문성 부족은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점으로서 높은 응답을 보여 현장의 전문성 확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3-17〉 사업 추진의 문제점 분야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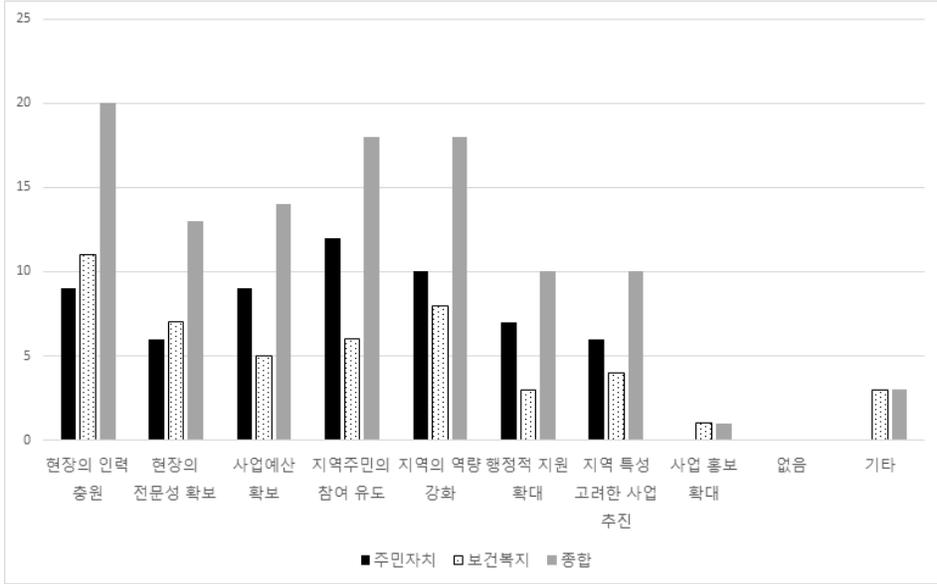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 주공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사업의 문제점과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였는데, 지역의 역량 강화, 현장의 인력 충원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조사되었음

〈표 3-34〉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분야별 비교

| 구분 | 주민자치 | | 보건복지 | | 종합 | |
|-----------------|------|-------|------|--------|------|--------|
|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 현장의 인력 충원 | 9 | 15.25 | 11 | 22.92 | 20 | 18.69 |
| 현장의 전문성 확보 | 6 | 10.17 | 7 | 14.58 | 13 | 12.15 |
| 사업예산 확보 | 9 | 15.25 | 5 | 10.42 | 14 | 13.08 |
|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12 | 20.34 | 6 | 12.50 | 18 | 16.82 |
| 지역의 역량 강화 | 10 | 16.95 | 8 | 16.67 | 18 | 16.82 |
| 행정적 지원 확대 | 7 | 11.86 | 3 | 6.25 | 10 | 9.35 |
| 지역 특성 고려한 사업 추진 | 6 | 10.17 | 4 | 8.33 | 10 | 9.35 |
| 사업 홍보 확대 | 0 | 0.00 | 1 | 2.08 | 1 | 0.93 |
| 없음 | 0 | 0.00 | 0 | 0.00 | 0 | 0.00 |
| 기타 | 0 | 0.00 | 3 | 6.25 | 3 | 2.80 |
| 계 | 59 | 100 | 48 | 100.00 | 107 | 100.00 |

-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20.34%)와 지역의 역량 강화(16.95%)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현장의 인력 충원(22.95%)과 지역의 역량 강화(16.69%)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자치 분야는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역량,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현장의 보건복지 인력과 지역사회 역량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18〉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분야별 비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규모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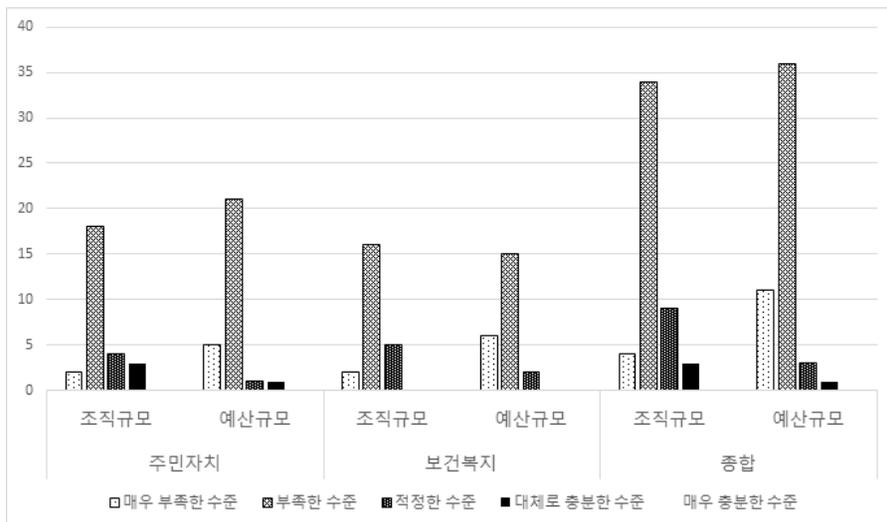
- 추진단의 조직규모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두 분야의 응답자 모두 타 응답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격차를 보이면서 ‘부족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보건복지 분야의 응답자들이 주민자치 분야의 응답자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음

〈표 3-35〉 추진단의 조직규모 및 예산 분야별 비교

| 구분 | 주민자치 | | | | 보건복지 | | | | 종합 | | | |
|---------------|-----------|--------------|-----------|--------------|-----------|--------------|-----------|--------------|-----------|--------------|-----------|--------------|
| | 조직 규모 | | 예산 규모 | | 조직 규모 | | 예산 규모 | | 조직 규모 | | 예산 규모 | |
| | 응답 수 | 비율 (%) |
| 매우 부족한 수준 | 2 | 7.41 | 5 | 18.52 | 2 | 8.70 | 6 | 26.09 | 4 | 8.00 | 11 | 21.57 |
| 부족한 수준 | 18 | 66.67 | 21 | 77.78 | 16 | 69.57 | 15 | 65.22 | 34 | 68.00 | 36 | 70.59 |
| 적정한 수준 | 4 | 14.81 | 1 | 3.70 | 5 | 21.74 | 2 | 8.70 | 9 | 18.00 | 3 | 5.88 |
| 대체로 충분한 수준 | 3 | 11.11 | 1 | 3.70 | 0 | 0.00 | 0 | 0.00 | 3 | 6.00 | 1 | 1.96 |
| 매우 충분한 수준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계 | 27 | 100 | 28 | 100 | 23 | 100 | 23 | 100 | 50 | 100 | 51 | 100 |
| 5점 척도 기준 평균 | 2.29 | | 1.93 | | 2.13 | | 1.83 | | 2.13 | | 1.83 | |

-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충분한 수준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조직규모에서 11%, 예산 규모에서는 3%였으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이러한 응답이 없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3-19〉 추진단의 조직규모 및 예산 분야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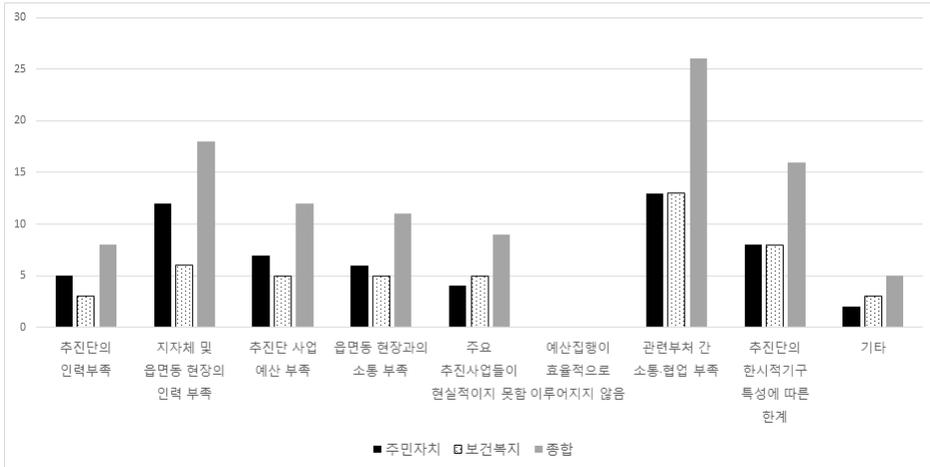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은 각 분야별로 유사한 응답을 보였으며, 공통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있어서 부처 간 경계를 넘어 읍면동 차원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보건복지, 지역복지, 노인복지 등 다양한 정책부서(과)간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할 것인데, 다양한 관련부처(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이 부족함을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부족과 추진단의 한시적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를,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추진단의 한시적 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와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부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외에 추진단 사업 예산 부족과 읍면동 현장의 소통 부족도 다음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표 3-36〉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분야별 비교

| 구분 | 주민자치 | | 보건복지 | | 종합 | |
|----------------------|-----------|--------------|-----------|--------------|-----------|--------------|
|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 추진단의 인력부족 | 5 | 8.77 | 3 | 6.25 | 8 | 7.62 |
|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부족 | 12 | 21.05 | 6 | 12.50 | 18 | 17.14 |
| 추진단 사업 예산 부족 | 7 | 12.28 | 5 | 10.42 | 12 | 11.43 |
|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부족 | 6 | 10.53 | 5 | 10.42 | 11 | 10.48 |
| 주요 추진사업들이 현실적이지 못함 | 4 | 7.02 | 5 | 10.42 | 9 | 8.57 |
|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0 | 0.00 | 0 | 0.00 | 0 | 0.00 |
| 관련부처 간 소통·협업 부족 | 13 | 22.81 | 13 | 27.08 | 26 | 24.76 |
| 추진단의 한시적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 | 8 | 14.04 | 8 | 16.67 | 16 | 15.24 |
| 기타 | 2 | 3.51 | 3 | 6.25 | 5 | 4.76 |
| 계 | 57 | 100.00 | 48 | 100.00 | 105 | 100.00 |

〈그림 3-20〉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 분야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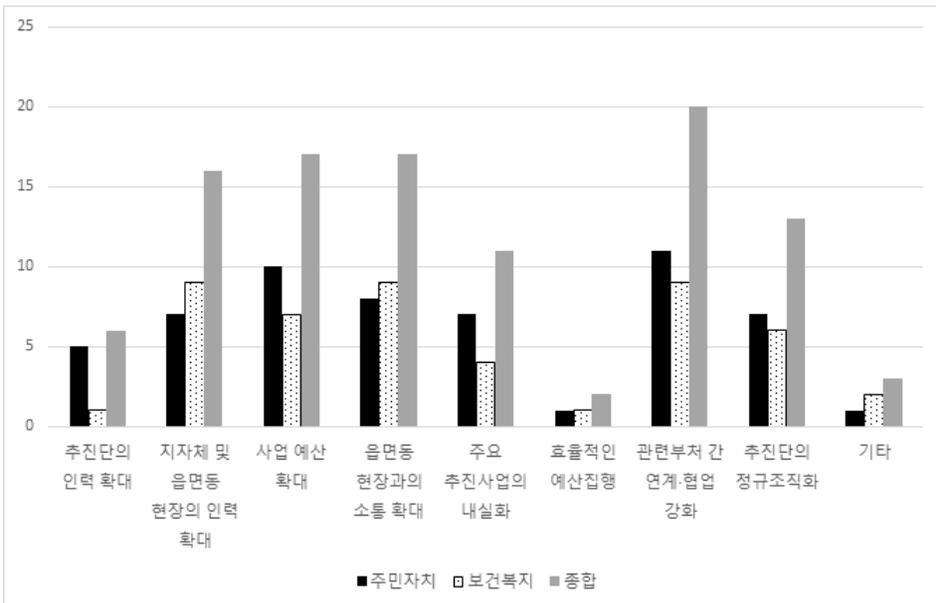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또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두 분야에서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위 운영체계의 문제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처 간 경계를 넘는 다양한 정책부서(과) 간의 연계 및 협업 강화가 주요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사업예산의 확대,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확대를,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확대,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확대가 주요하게 보완해야 할 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외에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요 추진사업의 내실화와 추진단의 정규조직화를,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업예산의 확대와 추진단의 정규조직화를 보완해야 할 점으로 보고 있음

〈표 3-37〉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분야별 비교

| 구분 | 주민자치 | | 보건복지 | | 종합 | |
|---------------------|------|--------|------|--------|------|--------|
|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 추진단의 인력 확대 | 5 | 8.77 | 1 | 2.08 | 6 | 5.71 |
|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확대 | 7 | 12.28 | 9 | 18.75 | 16 | 15.24 |
| 사업 예산 확대 | 10 | 17.54 | 7 | 14.58 | 17 | 16.19 |
|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확대 | 8 | 14.04 | 9 | 18.75 | 17 | 16.19 |
| 주요 추진사업의 내실화 | 7 | 12.28 | 4 | 8.33 | 11 | 10.48 |
| 효율적인 예산집행 | 1 | 1.75 | 1 | 2.08 | 2 | 1.90 |
|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 | 11 | 19.30 | 9 | 18.75 | 20 | 19.05 |
| 추진단의 정규조직화 | 7 | 12.28 | 6 | 12.50 | 13 | 12.38 |
| 기타 | 1 | 1.75 | 2 | 4.17 | 3 | 2.86 |
| 계 | 57 | 100.00 | 48 | 100.00 | 105 | 100.00 |

〈그림 3-21〉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 분야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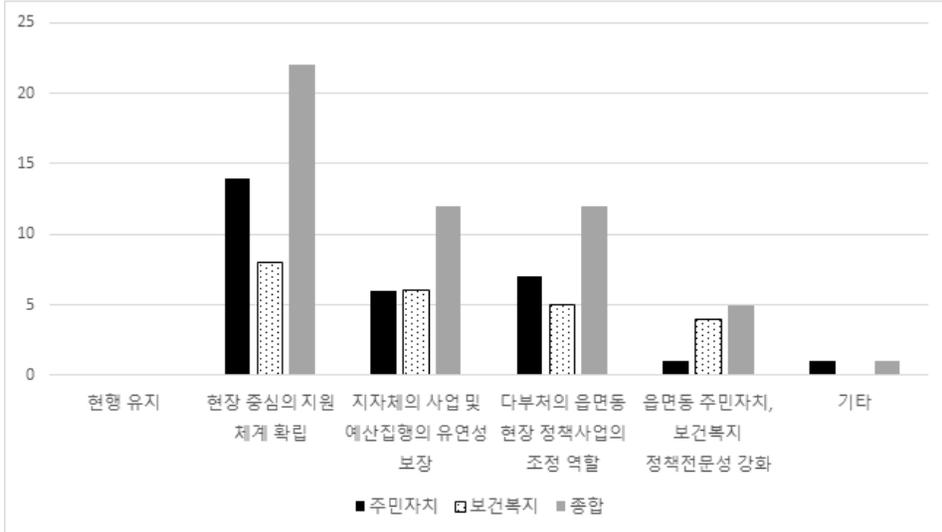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이 지자체(읍면동)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 가져야 할 역할과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두 분야가 거의 동일한 응답을 보였는데, 두 분야 모두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을 추진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 및 지원사항으로 꼽았음
-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과 지자체 사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 보장을,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 보장과 다부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을 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정책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분야가 주민자치 분야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민자치분야에서는 정책전문성보다는 현장중심의 주민참여 확대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관련 분야의 정책전문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38〉 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분야별 비교

| 구분 | 주민자치 | | 보건복지 | | 종합 | |
|-------------------------|------|--------|------|--------|------|--------|
|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응답 수 | 비율(%) |
| 현행 유지 | 0 | 0.00 | 0 | 0.00 | 0 | 0.00 |
|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 | 14 | 48.28 | 8 | 34.78 | 22 | 42.31 |
|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 보장 | 6 | 20.69 | 6 | 26.09 | 12 | 23.08 |
|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 | 7 | 24.14 | 5 | 21.74 | 12 | 23.08 |
|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정책전문성 강화 | 1 | 3.45 | 4 | 17.39 | 5 | 9.62 |
| 기타 | 1 | 3.45 | 0 | 0.00 | 1 | 1.92 |
| 계 | 29 | 100.00 | 23 | 100.00 | 52 | 100.00 |

〈그림 3-22〉 추진단의 역할 및 지원사항 분야별 비교



제3절 평가결과 종합 및 시사점

1. 평가결과의 종합

□ 주민자치 분야

- 주민자치 분야의 추진단 사업 계층화를 통한 사업 중요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야에서는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보다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이 더 중요한 세부사업으로 분석되었음
-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과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보다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가 더 중요도를 가진 사업으로 분석되었음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사업은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읍면동(지역, 마을단위) 중심의 사업’이 주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 분야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과 ‘현장의 전문성 부족’ 등이 꼽혔으며,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지역의 역량강화’, ‘현장의 인력 충원’, ‘사업예산의 확보’ 순으로 조사되었음

□ 보건복지 분야

- 보건복지 분야의 추진단 사업 계층화를 통한 사업 중요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야에서는 ‘주민력 강화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혔으나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 분야

또한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가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개편’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의 세부사업에서는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과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보다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민력 강화 지원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이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보다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나 그 격차는 크지 않았음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사업은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과 현장 중심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지자체 보건복지 인력확충’과 ‘시군구, 읍면동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과 주민력 강화 지원’이 주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현장의 인력 부족’과 현장의 전문성 부족’ 및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 등이 꼽혔으며,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현장의 인력 충원’, ‘지역의 역량 강화’, ‘현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순으로 조사되었음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운영체계 및 역할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충분한, 매우 충분한 수준’의 응답율은 매우 낮았음
-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공동체, 지역혁신 관련 정책사업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 노인복지, 보육정책 등 다양한 유관 부서

(과)와의 소통·협업이 중요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보여진다는 응답으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공히 ‘관련부처 간의 소통 및 협업 부족’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부족’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추진단의 한시적 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 등이 지적되었음

-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와 ‘사업예산 확보’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확대’,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확대’ 및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
- 추진단이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 공히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 집행의 유연성 보장’과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되었으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두 응답 항목의 순서가 바뀌었음
- 한편 추진단이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주민자치 분야는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정책전문성 강화’라는 응답이 3.45%에 불과한 반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동 항목에 대한 응답이 17.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성과 및 시사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주공사업이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 및 활성화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단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비교적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에서 현장에 밀착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가 읍면동 현장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추진단의 주공사업을 통해서 읍면동 현장에 안착되어 향후 정책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일 것임

- 다만,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자치조직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향후 주요한 성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난 3~4년간 상당한 수준의 보건복지 관련 인력이 읍면동에 확충되면서 현장 복지 중심의 정책노력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부족 또는 현장 인력 확대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읍면동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지극히 읍면동 공무원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 취약계층의 증대 등과 맞물려 보건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읍면동의 주민조직 강화,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조직과 협력하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연계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4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향후 방향

- 제1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개선방안
- 제2절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제3절 자치분권 2.0과 읍면동 권한 강화

1. 법제도적 기반마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모델 구축과 읍면동 현장지원 내실화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확대된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관련법 및 규정 부재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 및 정비가 필요함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설립·운영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 현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은 행정안전부내에 위치한 임시조직으로써 읍면동의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제공의 읍면동 현장에서의 수용성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주공 사업 정책의 확산과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서비스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정책사업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장지향적 성격이 매우 크므로 다소 실험적인 현장 지원활동을 체계화하고 모델화하여 다양한 지자체 등으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
- 주민자치, 주민총회,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 등 주민과 관련한 종합적 읍면동 현장 기반의 사안과 이슈에 대한 지원조직 (ex. 주민정책과)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화, 제도화 및 법제도의 홍보 강화를 통한 현장

에서 실효성이 입증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읍면동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 협력, 협업을 위한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호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그리고 보건복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체계 강화

- 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및 법제화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추천제,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개방된 분과위원회 운영,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사무국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 주민참여, 주민력 강화 등 주민주도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원 및 역량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강화가 필요함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회와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읍면동내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간 관계설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공동 사무국의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의 협력체계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단 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 다부처 읍면동 정책사업의 총괄적 조정 및 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

- 현 행정안전부내 임시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의 한계를 탈피하고 다양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정책사업 추진의 플랫폼적 조직으로 위상 부여하고 기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사업,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특화사업, 농림부의 농촌축제지원사업, 농촌중심지사업, 국토교통부의 읍면동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여가부의 돌봄공동체지원사업

등 다양한 부처의 읍면동 현장 중심 사업의 연계, 조율, 조정, 지원, 심의 기구적 성격을 부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부처의 읍면동 관련 정책사업이 단기간에 읍면동에 집중되어 소위 정책사업 깔데기 현상이 발생하고, 현장의 실행역량 부족 등으로 부실화된 정책사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될 수 있음
 - 다부처의 정책사업이 일정 수 이상이거나, 사업이 종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단일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예산사업이 읍면동에서 추진될 경우, 읍면동 단위의 민과 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읍면동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현장조직이 설치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부처사업 연계, 조정, 지원 및 필요시 심의할 수 있는 협력 조직으로서의 추진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칭 다부처 읍면동 정책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운영,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읍면동에 밀착된 현장성 기반의 선도적인 주요 정책사업의 제도화를 실험하는 읍면동 현장 기반의 지원조직으로 기능함
 - 읍면동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사업의 연계와 지원을 위한 조직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다부처간 읍면동 현장 기반 정책사업의 협의 및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함

○ 소지역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연계협력사업의 조정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지방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의 종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멸의 위기, 지역 불균형 해결을 위한 사회 아젠다 주도, 읍면동 현장에서 정부 부처 협력의 실제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수행함
- 다부처 연계 사업과 같은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역사회(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 사업 기획, 설계, 발굴 및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 다부처 및 다부서간 협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모색 및 시행을 함

□ 다양한 읍면동간 경험(사례) 공유 및 활성화

-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경험적 노하우 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주민조직, 읍면동, 지자체 행정 간의 상시적 소통, 직접 소통, 벤치마킹이 가능한 시스템(홈페이지, 앱, SNS, 정보은행 등) 및 공론장 운영 활성화를 지원함
 - 2020년 온라인 주민자치박람회 사이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현장 기반 주민밀착형 정책사업 추진 및 강의방식의 교육보다는 학습과 경험에 기반한 워크숍과 콜로키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성공적 사례 창출과 확산이 필요함
 -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인력계획 수립 및 지원, 공공서비스 모델 제시 등이 필요함
 - 공동체와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는 마을자치계획과 마을복지계획의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함
 - 도시, 농촌, 도농복합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율적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함
 -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및 행정사무 위수탁 등 주민자치회 실질적 권한 확대 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 주민자치회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서비스 시설 현황 정리 및 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차원 정책사업 추진 활성화

- 현장성 있는 정책사업 개발 및 실행이 중요함
 - 정책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읍면동 현장의 주민, 주민조직, 읍면동 행정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현장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사업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주민자치 확대에 따른 현장 지원체계 및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연한 사업추진을 위한 케이스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읍면동 현장 기반 정책사업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지원함
 -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협력과 협치를 위한 읍면동 리더 발굴 및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고, 마을기금, 공동체 지역자산화, 생활SOC 연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1.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

□ 읍면동장 및 읍면동 공무원 역량 강화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 및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제 도입 확대
 - 전국 3,500여개 읍면동장과 관련하여 주민추천제와 개방형 직위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의 변화와 혁신은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한 외적 요인을 통한 혁신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행정조직 내부적 행정혁신도 중요함
 - 지역사회에 대한 읍면동장 및 행정공무원의 역할 증진 및 인센티브적 보상체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장 기반 읍면동 공무원 역할 증진

- 현장과 지역사회에 밀착된 행정 공무원(인력) 발굴하고 배치할 필요
 -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등 읍면동 공공행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 주민자치, 찾아가는 보건복지와 같이 대주민 서비스 및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의 경우 계약직 공무원 채용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공무원의 잦은 지역사회 행사 동원을 자제하고 주민자치, 보건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지역 현장 경험 있는 공무원들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읍면동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현장 중심의 대응력 확보 지원

○ 현장 대응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지역사회 현안과 정보, 기술 및 행정과의 연계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주민안전과 민방위 체계의 읍면동 행정 및 주민자치회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마을복지, 주민자치 지원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단위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인식 개선 및 주민력(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

□ 읍면동과 본청간 업무조정 및 읍면동 행정력 강화

○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과의 업무 조정이 필요함

-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의 업무를 주민자치 활성화와 보건복지 지원에 맞게 조정하고 읍면동의 업무 중 시군구 본청 차원에서 수행해도 되는 업무를 축소하는 등을 통해 읍면동 업무 중 주민자치 업무 확대 및 보건복지 지원 확대를 도모함
- 주민서비스 접근성을 이유로 읍면동에 내려지는 타 부처의 다양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인력 충원과 주민조직과의 협력 강화로 보건복지 및 주민자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읍면동 행정사무 중 주민자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에 이관할 수 있는 업무 발굴하고 시행함

2.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과 주민조직 중심의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공간 운영

- 주민과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수탁 및 관리 권한을 대표적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에 부여함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 간의 권한 및 역할 범위를 명확화함
- 행정인력 확충을 통한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과 파트너십 강화하고 협력함

□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동 기능 변화

- 읍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사업 관련하여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읍면동 공무원의 인식개선 및 근무 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
 - 현장중심 행정수행에 대한 차별화된 근무성적 평정 및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회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개선함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며, 가령 와디즈 같이 읍면동의 혁신 아이디어를 올리고 정부(예, 추천인사 5,000명)가 정책 펀딩을 하는 공공정책 펀딩 플랫폼의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음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읍면동 자체 집행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주민자치회 분과 활성화

- 읍면동의 지역특성적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인구특성 및 계층특성이 반영된 노인복지, 보육, 청소년, 여성 등에 따른 의료상담, 건강관리, 교육여가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함

3.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및 읍면동 주민자치와 보건복지의 협력 시스템

□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전면 실시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실행함
 - 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읍면동의 주민조직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에서 자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조직 간의 관계 설정 및 통합적 운영방안을 모색함
- 주민자치회 도입 확대와 활성화 지원함
 - 읍면동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론장을 확대하고 활성화함
 - 지역자산에 대한 목록화, 읍면동 기금설치 및 주민자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공공자산(국공유재산 등)의 활용 활성화를 지원함
 - 주민참여예산 활용 혁신사례 발굴하여 확산함

□ 읍면동 차원 보건복지와 주민자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행안부와 복지부 소관 부서간 연계 및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읍면동의 보건복지와 주민자치의 결합을 위해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내 업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내 지역복지과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단 등 유사 정책사업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 내 지역공동체과, 자치분권제도과,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등 유사 정책사업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치와 복지의 협업 및 통합적 운영 모색하고 실행함
 - 마을자치계획과 마을복지계획의 관계설정 및 통합적 계획수립 및 실행이

중요함

-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긴밀한 협력 방안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큼
- 보건소(보건지소)와 읍면동 보건복지업무의 협업체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자치분권 2.0과 읍면동 권한 강화

1. 자치분권 2.0과 특례 읍면동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공공성에 기반한 읍면동 권한 강화를 통한 주민중심 공공 서비스 시행
 - 다양한 읍면동 특성을 고려한 (가칭) 특례읍면동 정책 준비 및 추진
 - 전국 3,500여개의 읍면동별 인구특성, 지역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 읍면동에 특화된 권한 부여 및 분권적 발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도시지역은 동(洞)은 과도한 인구규모로, 읍(邑)과 군(郡)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가칭 ‘특례 읍면동’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 부여 또는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소멸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필요함
 -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나왔던 특례시 관련 내용은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심의 특례부여 관련 사항이었으나, 특례 단위로 읍면동 단위를 검토하는 것임
 - 동단위의 경우는 평균적 인구규모인 2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5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동(洞) 단위에 ‘특례동’이라 하고 더 많은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 한편 인구가 과소한 읍면, 특히 면(面) 단위에 대한 ‘특례면’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문제(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소멸 등) 해결을 위한 자치 및 복지 등 관련 특례적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읍면동 관련 정책의 변화: 책임읍면동 → 혁신읍면동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 (가칭) 특례 읍면동
 - ※ 특례 읍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것인가는 향후 구체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

- 한편 특례 읍면동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의 ②항의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100만 이상 특례시(수원, 창원, 용인, 고양 등)에 특례 사항으로 ‘특례동(洞)’에 대해 규정하는 방안과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규정을 준용하여 특례 사항으로 ‘특례 읍면’에 대해 규정하는 방안
 - 지방자치법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다음에 ‘제10조2(읍·면·동의 특례)’를 신설하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읍·면·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5만명 이상의 읍과 동 2. 인구 3천명 미만의 읍과 면 3.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읍·면·동’ 읍면동 특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 특례 읍면동과 연계하여 읍면동 조직 인력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주민자치회 자치성 강화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무국 운영 및 실무 인력 지원과 지자체 읍면동 보건 복지 및 주민자치 전담인력 승인권 보장과 책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책임성에 기반한 주민자치 기반 마련하여 읍면동 권한의 이양과 자체 사업예산의 이양을 검토함
- 읍면동 행정과 주민조직이 자체적으로 주민생활 밀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 지역자원 및 현황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존재하지 않아 비예산 사업 또는 후원금 중심 사업을 추진하면 수혜자

만족도 저하 등 정책사업 효과가 떨어짐

2. 읍면동 뉴딜사업과 읍면동 자율계정

□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읍면동 뉴딜사업 도입

-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동 뉴딜을 추진함
 - 인재양성, 사회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휴먼 뉴딜은 민간참여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읍면동 현장의 변화가 중요함
 - 읍면동의 권한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읍면동 현장 중심 공공서비스 공급과 종합적 읍면동 물리적 환경개선(H/W, 소지역 도시재생 등) 및 주민역량 강화(S/W, 휴먼뉴딜) 사업이 결합된 읍면동 종합재생 또는 종합적 발전 계획으로서의 읍면동 뉴딜사업 추진함
 - (주거복지 실현) 읍면동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함
 - (읍면동 경쟁력 회복) 쇠퇴한 읍면동 구도심에 혁신적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디지털 기반의 읍면동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회복함
 -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 주민자치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주민조직들이 참여하고 소통, 협력하는 체계를 운영함
 - (일자리 창출, 청년뉴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함

□ 읍면동 기금과 읍면동 자율계정의 도입

- 읍면동 활성화 및 읍면동 뉴딜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읍면동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추진되었고 일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자본보조 등이 이루어졌으나, 재원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읍면동 중심의 사업추진이 요원함
 - 따라서 읍면동 중심의 행정혁신과 뉴딜의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수준의

체계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심의 균형발전에 대한 지출방식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함

○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재원투자 방식의 전환을 모색함

- 현재 낙후지역을 위한 국가재정의 투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산자부와 농림부 등의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농산어촌 활성화의 틀 하에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시군구 및 경제권역 중심의 사업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련된 재원과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향후 읍면동 주민자치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의 별도의 계정 혹은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읍면동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균특회계는 지역지원계정과 지역자율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 ‘일반농산어촌’,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의 개발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기존 체제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지역자율계정 중 시군구 자율계정 내 혹은 별도로 특례읍·면·동 또는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자율계정의 신설(필요시 관련 법 개정 필요)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자본보조 중심의 사업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읍면동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투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자치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현행 균특회계 내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2021.4.)에 따르면, 생활 SOC 3계년 계획 이행 및 복합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SOC 별도 지출한도를 ‘20~’22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 생활SOC 중점시설(공공 및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경우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최대 3년간)으로 현행대비 10%p 범위 내에서 가산하므로 이와 연계한 자치단체의 읍면동 적정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시·군·구의 자율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종합

●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연구의 종합

1. 사업평가 및 성과정리 종합

□ 개요

- 본 연구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연혁과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함과 더불어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과를 정리함
- 주민자치 분야는 6개 주요사업과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 분야는 4개 주요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다부처 사업은 1개 주요사업과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전문가 공통으로 조사되었음

□ 주민자치 분야

- 주민자치 분야의 추진단 사업 계층화를 통한 사업 중요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분야에서는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보다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이 더 중요한 세부사업으로 분석되었음
-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계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과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보다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가 더 중요도를 가진 사업으로 분석되었음

- 추진단의 사업은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활성화 및 발전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읍면동(지역, 마을단위) 중심의 사업’이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 분야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과 ‘현장의 전문성 부족’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지역의 역량강화’, ‘현장의 인력 충원’, ‘사업예산의 확보’ 순으로 조사되었음

□ 보건복지 분야

- 보건복지 분야의 추진단 사업 계층화를 통한 사업 중요도 분석에서는 대부분 야에서는 ‘주민력 강화 지원’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혔으나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 분야 또한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가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개편’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보다 중요도가 높게,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지역화의 세부사업에서는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과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보다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음
- 추진단의 사업은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과 현장 중심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지자체 보건복지 인력확충’과 ‘시군구, 읍면동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과 주민력 강화 지원’이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분야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현장의 인력 부족’과 현장의 전문성 부족’ 및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 등이 꼽혔으며,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현장의 인력 충원’, ‘지역의 역량 강화’, ‘현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순으로 조사되었음

□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 운영체계 및 역할

- 추진단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족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충분한, 매우 충분한 수준'의 응답은 매우 낮았음
- 추진단 운영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모두 '관련부처 간의 소통 및 협업 부족'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부족'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추진단의 한시적 기구 특성에 따른 한계' 등이 지적되었음
- 추진단 운영체계 중 보완해야 할 점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와 '사업예산 확보'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자체 및 읍면동 현장의 인력 확대', '읍면동 현장과의 소통 확대' 및 '관련부처 간 연계·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음
- 추진단이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 모두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다음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 집행의 유연성 보장'과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되었으나,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반대의 응답을 보임
- 한편 추진단이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지원 사항에 대한 질문에 주민자치 분야는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정책전문성 강화'라는 응답이 3.45%에 불과한 반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동 항목에 대한 응답이 17.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성과 및 시사점

□ 성과 및 시사점

-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의 주공사업이 주민자치 및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목표 달성 및 활성화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비교적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행정에서 현장에 밀착된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가 읍면동 현장지원을 강화하고자 한 추진단의 주공사업을 통해서 읍면동 현장에 안착되어 향후 정책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일 것임
- 다만,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향후 주요한 성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난 3~4년간 상당한 수준의 보건복지 관련 인력이 읍면동에 확충되면서 현장 복지 중심의 정책노력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부족 또는 현장 인력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읍면동의 주민조직 강화,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조직과 협력하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연계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정책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정책 제언5)

1. 법제도적 기반마련 및 추진단의 읍면동 정책사업에 대한 역할과 위상 강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법제도적 기반마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모델 구축과 읍면동 현장지원 내실화를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확대된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필요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설립·운영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
- 주민자치, 주민총회, 주민조례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 등 주민과 관련한 종합적 읍면동 현장 기반의 사안과 이슈에 대한 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체계 강화

- 읍면동 대표적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및 법제화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회와 협력 강화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을 다부처 읍면동 정책사업의 총괄적 조정 및 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

- 현 행정안전부내 임시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의 한계를 탈피하고 다양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정책사업 추진의 플랫폼적 조직으로 위상 부여
- 소지역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연계협력사업의 조정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

5) 제4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향후 방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정책 제언함

□ 다양한 읍면동간 경험(사례) 공유 및 읍면동 차원 정책사업 추진 활성화

-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경험적 노하우 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성공적 사례 창출과 확산
- 현장성 있는 정책사업 개발 및 실행과 정책사업 관리 역량 강화

2.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읍면동 현장 행정 강화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 및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제 도입 확대
- 현장과 지역사회에 밀착된 행정 공무원(인력) 발굴 및 배치
- 읍면동과 본청간 업무조정 및 읍면동 행정력 강화

□ 읍면동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과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수탁 및 관리 권한을 대표적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에 부여
- 읍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사업 관련하여 주민과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주민자치회 지원 중심으로 읍면동 기능개선

□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과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협력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 읍면동 차원 보건복지와 주민자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자치분권 2.0과 읍면동 권한 강화

□ 자치분권 2.0과 ‘특례읍면동’

- 다양한 읍면동 특성을 고려한 (가칭) 특례읍면동 정책 준비
- 특례 읍면동과 연계하여 읍면동 조직 인력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주민자치회 자치성 강화

□ 읍면동 뉴딜사업과 읍면동 자율계정

-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읍면동 뉴딜사업 도입
- 읍면동 기금과 읍면동 자율계정의 도입

- 곽현근(2019), 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순은(2012).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 김주원(2018). 분권시대, 주민자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18-40. 강원연구원
- 김찬동(2014).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98호) 2014.9. 61-85
- 김필두(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 김필두·류영아(2008).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12
- 김필두·류영아(2015).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09
- 김필두·최인수(2017),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정립,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정책이슈 리포트.
- 김필두·최인수(201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구보고서 2018-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한부영(2017),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흥주(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 더브릿지컨설팅(2020). 2019년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 오윤경(2020). 2020년 재난안전사업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유수동·전성훈(2017). 주민자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110호) 2017.9 115-142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 조은성(2020). 소위 Cronbach's alpha에 대한 종합적 고찰. 상품학연구, 38(1), 9-20.
- 최인수·이병기(2015), 부산지역 주민자치회 적정모델 진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최인수·전대욱·장인성(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정책연구 20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2018),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2019), '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안)
-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020), 2020년 주민복지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020),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20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집
- 행정안전부(202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의미와 방향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2019).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지원 워크숍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020).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
- 행정안전부(2020).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 분야 매뉴얼
- 행정안전부(2020).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 행정안전부(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0).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매뉴얼
- 관계부처 합동(2018),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Nunnally, J. C.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NY: McGraw-Hill.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부록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주민자치 분야 등) 평가를 위한 설문

ID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현 주민복지 서비스개편추진단)이 추진해 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개선방안과 대안,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정책과제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정보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응답자 및 응답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 ♣ 연구 진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 전대욱 연구위원
- ♣ 설문 문의: 033-769-9850, ischoi@krila.re.kr
- ♣ 연구 지원: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I.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다음 사항은 통계분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 드립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문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20세 미만 ② 만 20~29세 ③ 만 30~39세 ④ 만 40~49세
 ⑤ 만 50~59세 ⑥ 만 60~69세 ⑦ 만 70~79세 ⑧ 만 80세 이상

문3. 귀하의 **직업(종사)**은 무엇입니까?

- ① 중앙부처 공무원 ② 광역, 기초지자체 본청공무원
 ③ 지자체 읍면동 공무원 ④ 대학교·연구기관 임직원
 ⑤ 주민자치 지원기관 종사자 ⑥ 보건복지 관련 지원기관 종사자
 ⑦ 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⑧ 기타()

문4. 귀하의 **해당분야 업무 경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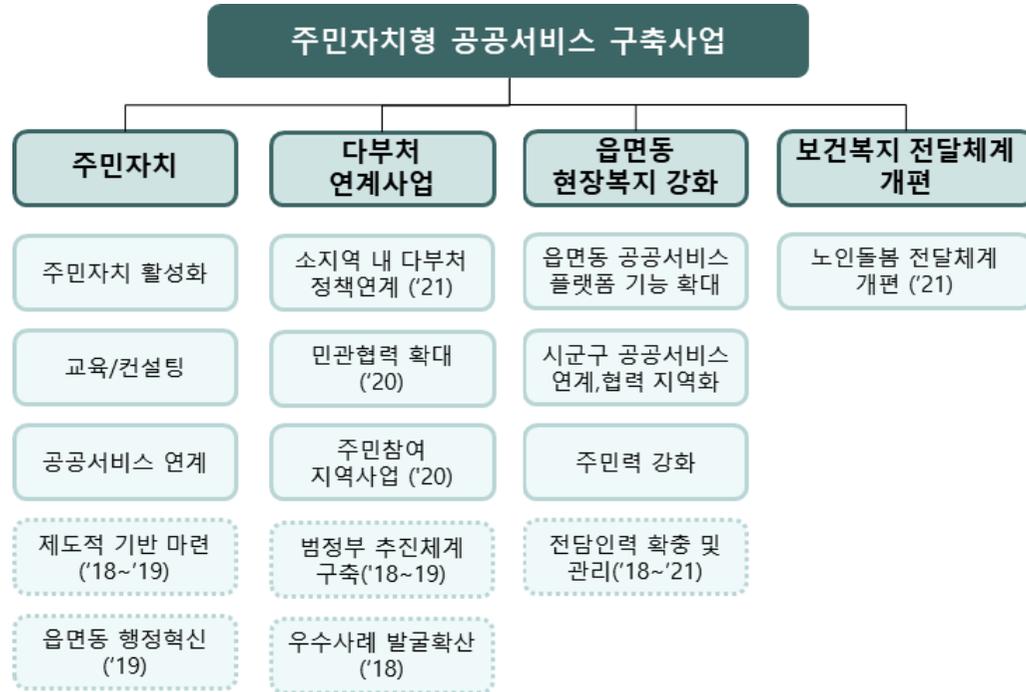
- ① 1년 이하 ② 2년 이하 ③ 5년 이하 ④ 10년 이하
 ⑤ 15년 이하 ⑥ 15년 이상

문5. 귀하의 **업무분야**는 다음 중 어느 분야와 가장 가깝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주민자치 ② 보건·의료 ③ 복지 ④ 도시재생
 ⑤ 지역공동체 ⑥ 사회적경제 ⑦ 행정 ⑧ 기타()

〈 개 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크게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지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연계 사업과 2021년 신설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II.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사업 평가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이중 주민자치 분야는 다음과 같은 추진사업과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응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 야 | | 추진과제 |
|-----|---------------------------|---|
| 1 |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 ① 공공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 2 |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③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④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
| 3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지원 분야 | 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⑥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⑦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 4 |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주민자치지원 분야 | ⑧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⑨ 주민자치 기반 민·관 협력 확대 ⑩ 지역 공문사업 연계·지원 |

| 추진사업 | 주요 추진과제 |
|--------------|--------------------------|
|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과제 1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제도 기반 마련 및 공론장 운영 필요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제도 근거 마련 추진 *자치분권제도와 협력
 - (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역할, 재정지원 등 법제화 지원
 - (조례) 주민자치회 대표성·민주성·집행력 강화 중심 조례(안) 지원
 - (시범사업)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대상 지역으로 지정
 - ※ '20년 시범실시 지역 626개소 운영 중
- 주민자치사업 재원(주민세, 참여예산, 특별회계 등) 확충 지원
 - 주민세 개인 균등분 상당액 활용, 읍·면·동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 * 지방세정책과, 재정정책과 협력
 - 자치재원 규모 확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지자체 협업 및 사례 전파
- 민·관·학 주민자치 정책 공론장 운영 지원
 - 온·오프라인 사례 공유, 정책 방향 등의 이슈별 포럼(2회)
 - 전국 권역별 주민자치 현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현장 경험 기반의 소규모 연구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운영 혁신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담당자 전문직위제 운영 지원

● 추진일정

- 제도, 재원 확충 방안, 공론장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2~11월)

과제 2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추진배경

- 주민자치 관련 민간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 활성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자치단체 주민자치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 시·도, 시·군·구 공무원 교육(상반기 권역별 설명회 등 2회)
 - 읍·면·동 담당자 교육(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계 교육 1회)
 - 주민자치회 회장 등 임원 교육(1회)
- 주민자치 민·관 전문인력 양성-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20개팀(1개팀-민간인 2명, 공무원 2명) 선정
 - * '20년 21개팀 총 84명 운영
 - 시군구청장협의회·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 주최
 - 과제 수행형 워크숍 방식 교육(전문 코칭단 운영)
- 자치단체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자치단체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
 - 자치단체별 수석컨설턴트 지정·교육을 통한 책임성 강화
 - * '19년 자치단체 25개, '20년 26개, 수석컨설턴트 12명 운영

● 추진일정

- 주민자치 민관 교육 추진(2~11월)
-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추진(3~11월)
-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운영(4~11월)

과제 3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방향 제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제도약 필요

● **주요내용**

- 핵심 의제 발굴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총회 역할 강화
- 읍·면·동 중기 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사업화

| 현재 | 미래 |
|---|---|
| 보조사업 발굴 및 사업 승인 (예시) '19년 금천구 주민총회 결정 사항 - 참여예산 : 34개 사업(동별 2천만원) - 주민세 : 40개 사업(동별 2~7천만원) | 정책 의제 결정, 발전계획 수립 (예시) - 읍·면·동 발전 계획 수립 - 핵심 정책 의제 발굴 및 확정 * 체육관 건립, 특수학교 신설, 축사 허가, 골목 안전강화, 마을인프라, 교복지원 등 ** 보조사업은 주민공모사업 운영 및 주민참여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 |

-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회복·강화하고, 위탁 및 보조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민자치회 연관 실행 법인 도입 지원
-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역재생, 사회적 부동산, 지역주체 육성, 지역금융 등 포괄적 범위의 지역 사업 수행

● **추진일정**

- 주민총회 강화 및 사업수행법인 공모사업 공고 및 실행(2월)
- 주민총회 강화 및 사업수행법인 교육 및 컨설팅 운영(5월)
- 공모사업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11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방향 제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제도약 필요

● **주요내용**

- 주민자치 중심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관련 공모사업 진행
-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프로세스 고도화
 - (과제) ① 심화된 지역현황 조사 및 지역의제 조사 프로세스 진행 : 양질의 공론화 과정 운영, 고도화된 의제 도출
 - ② 읍·면·동 비전 및 3개년 이상의 동 지역 발전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구축
 - (과제) ① 법인에 관한 주민 대상 교육 및 의견 수렴 과정 진행
 - ② 법인 설립(신규) 또는 고도화(기설립지역)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컨설팅 내용) 지역 조사(자원, 공공서비스, 사경생태계 등), 사업모델 등
 - ③ 위·수탁 사업 발굴(지자체)

● **추진일정**

- 주민자치 고도화 대상지 선정(2월)
- 합동워크숍 및 컨설팅 운영(3~11월)
- 공모사업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11월)

※ 아래의 응답 예시는 추진사업 분야의 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 비슷하면 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②~⑤ 사이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예시) | 매우 중요 | ← | | | 비슷 | → | | | 매우 중요 | 평가기준(예시) |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문06. 다음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주민자치 분야)의 주요 추진사업 분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 매우중요 | ← | | | 비슷 | → | | | 매우중요 | 평가기준 |
|--------------|------|---|---|---|----|---|---|---|------|---------------------------------|
|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

문07. 다음의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업 | 중요도 | | | | |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① | ② | ③ | ④ | ⑤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08. 다음의 「주민자치 확산과 활성화」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 매우 중요 | ← | | | 비슷 | → | | | 매우 중요 | 평가기준 |
|--------------------------|----------|---|---|---|----|---|---|---|----------|--------------------------|
| | | ④ | ③ | ② | | ① | ② | ③ | |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은 추진사업과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응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 야 | | 추진과제 |
|-----|---------------------------|---|
| 1 |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 ① 공공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 2 |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③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④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
| 3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지원 분야 | 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⑥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⑦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 4 |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주민자치지원 분야 | ⑧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⑨ 주민자치 기반 민·관 협력 확대 ⑩ 지역 공문사업 연계·지원 |

| 추진사업 | 주요 추진과제 |
|---------------------------|-------------------|
|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 |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 |
|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

과제 4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추진배경**

-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기반의 직접 실행사업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융합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 연계 지원 *행안부 협력형 별도 선정
 - (개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전단계 사업
 - (내용)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구 주관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 (18년부터 시행)
 - * 건당 0.5-2억원(지자체 매칭 50%)
 - (현황 및 계획) '18년 4건, '19년 9건 선정 → '20년 12개 예정
- 국토부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특화유형) 연계 지원
 - (내용) 인구 감소로 지역 내 공공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H/W)공공시설의 집적, (S/W)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정혁신을 지원하는 협업사업
 - (현황 및 계획) '19년 2건(경북 의성·청도), '20년 2개소 예정

● **추진일정**

- (소규모도시재생) 공모·공모(4월), 평가·선정(5월), 워크숍(6월), 예산교부(7월)
 - * 국비 총 100억, 사업별로 0.5억원~2억원을 단년간 국고보조(지자체 매칭 50%)
- (집약형) '20년도 집약형 도시재생 공모 및 선정(12월)

과제 5 주민자치 기반 민·관 협력 확대

● **추진배경**

- 인구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의 복잡·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중앙주도의 단일부처 하향식 지역사업 방식으로 풀기에는 한계
- 민간기금, 기업 등의 지역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협력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주요내용**

- (다부처 MOU 추진)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성화의 융합적 협력을 위해 5부처(행안·국토·복지·농림·교육) MOU 체결
 -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고도화 추진, '19년 기 선정된 시범사업지(의성, 청도) 중 사업의 고도화 및 확산을 위한 모델화 적합지를 선정·지원 예정
 - * 선정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5개 부처가 컨설팅·공모사업 인센티브 등으로 지원
 - MOU 부처인 복지부 등이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 및 부처 간 협업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대표협의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 '19년 행안부-교육부 협업을 통해 교육부 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선정지역에서 자치·교육 연계를 위해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분과' 설치 협의
- (민간지원단체 주도형 사업) 소지역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소지역의 실질적 변화 유도
 - * 주민참여, 지역조사,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운영하여 공공사업을 설계·추진
 - **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SR임팩트, 행안부 MOU 체결('19.11.)
 - (대상 선정) 민간지원단체 추천에 의한 MOU 기관 공동선정
 - (지역협력체계) 공동의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협력하여 같이 해결할 민·관 지역주체간 MOU 체결 지원
 - (지원) 지역주체 발굴 및 모집, 지역의제 찾기, 지역자원조사 등 지역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턴트 선정 및 지원, 지역의제 실행을 위한 민간기금 및 공모사업 연계
 - (현황 및 계획) '19년 3개소(아산, 영광, 제주) → '20년 5개소 예정

• (4개 유관단체* 연계사업)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

* 시·군·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위, 균형발전위, 행안부

- 자치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지역혁신을 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치단체와 민간 활동가 통합 역량 강화 교육 운영
- 연간 지속 교육을 통한 효과 극대화

• (민·관 협의기구 운영) 전국 단위 주민자치 연관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기구 운영

* 예시)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사)열린사회시민연합, (협)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재)지역재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포럼 4회 공동 추진('18년)
- 주민세 활용방안 토론회('18.5), 주민자치 법제도 개선('18.7), 지역재생과 주민자치 융합 모색('18.9), 농촌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18.12)
- 전국 주민자치 전문 민간단체 감사 및 활동가 교육('19년)
- 시·도별 민·관 협의를 통한 교육대상자 추천 및 2개 권역별 2박3일 교육('19.4), 전국 주민자치 강사 리스트(200여 명) 전국 배부('19.5)

● 추진일정

- 5개 부처 MOU 등 협업사업 지속 운영(~12월)

과제 6 지역 공모사업 연계·지원

● 추진배경

- 부처별로小지역 단위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 범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원활히 연결하고 사업의 효과성 증대 필요

● 주요내용

- 각 부처 지역사업 정보를 집약·체계화
 - 지역 현안과 관계되는 지역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지역사업 내용, 절차 등을 종합·체계화해 지역사회와 공유
 -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자료집 제작
 - 자치단체에서 주민과 지역사회 대상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 '19.2.26. 행안부 주관, 지역사업 합동설명회 개최(15개 부처 38개 사업)



지역사업 연계 개념도



● 추진일정

- 부처별 지역공모사업 취합·분류(~'19년말) 및 관계부처 협의(20년 상반기)
- 지역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자치단체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20년 하반기)



지역사업 연계 절차 흐름도



〈 참고자료 〉

과제 4 중앙부처 주민참여 정책과의 연계 강화

● 추진배경

-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주민참여 기반 정책과의 연계 필요

● 주요내용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정책과의 연계
 - ① 도시재생 예비사업 연계 지원(행안부 협력형 별도 선정)
 - (내용) 도시재생뉴딜 사전사업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를 통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지원
 - * 개소당 0.5~2억원의 국비 자원(지자체 별도 매칭 50%)
 - ** '18년 4개소, '19년 9개소, '20년 9개소, '21년 6개소 예정
 - ② 도시재생 지역특화유형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운영
 - (내용) 인구 감소 지역 내 공공생활서비스를 중심지로 주변지로 재구성하고, 주민참여 기반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
 - * '19년 2개소, '20년 1개소, '21년 2개소 예정
- 중앙부처 주민참여 기반 정책과의 연계 운영
 - 각 부처 공모사업에 주민자치회 연계 운영 시 공모 선정 가점 부여
 - * (교육부) 미래형교육자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 타 부처 사업과의 지속적 연계 방안 마련

● 추진일정

- (예비사업) 공모('20.9월), 평가·선정('20.12월), 워크숍 및 예산교부('21.2월)
- (서비스집약형) 공모('21.6월), 평가('21.10월), 도시재생특위 선정('21.11월)
- (중앙부처 연계) 연계사업 발굴 및 협의(1~12월)

〈 참고자료 〉

과제 5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 추진배경

- 지역에서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증대
- 부처별 정책은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성과 한계
- 정부-지역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 역량 미비
 - ⇒ 지역의 부처 간 사업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정책 효과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5부처 MOU* 기반 사업 연계로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 선정(5부처 합동)
 - 지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부처는 지원 가능 방안 적극 검토(상향식)
 - * 자치·돌봄·재생·교육 등 부처 지역사업의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해 행안·교육·농식품·복지·국토부 등 5개 부처 간 협약 체결('20.3월)
 - **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역범위 내 생활권 (1~3개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공공생활서비스 공유 가능 범위)
- 부처 간 정책 연계사업 추진을 돕는 지원체계 구축
 -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주민 및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 보완
- 지역 맞춤형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 지역 현황, 부처 정책, 주민 의견 등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
- 지역 이슈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운영
 - * 중앙·지방정책협의체, 지역민·관할동협의체, 주민협의체 등
- 다부처 협력사업 추진 기반 확산
 - 사업추진 전 과정 매뉴얼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과 홍보 추진 등

● 추진일정

- 공모('20.12.~'21.1월) → 사업지 선정/합동워크숍(2월) → 사업추진(~12월) → 성과 홍보(12월)

▶ (예산)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총 10억원 : 5개소×2억원(국비 1, 지방비 1)

문09. 다음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진과제 | 중요도 | | | |
|-------------------|-----|---|---|---|
| | ① | ② | ③ | ④ |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① | ② | ③ | ④ |
|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 | ① | ② | ③ | ④ |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 ① | ② | ③ | ④ |

문10. 다음의 「지역사업 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 매우 중요 | ← | | | 비슷 | → | | | 매우 중요 | 평가기준 |
|-----------------|----------|---|---|---|----|---|---|---|----------|-------------------|
| | | ④ | ③ | ② | | ② | ③ | ④ | | |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 |
|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
| 주민자치 기반 민관협력 확대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

Ⅲ. 주민자치 분야 추진사업에 관한 설문

문11. 행정안전부의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사업이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사업의 추진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각 분야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의 주민자치 분야 **사업의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분야 |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비교적 영향을 덜 미침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 상당히 영향을 미침 |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
| 읍면동 현장인력의 확충 | ① | ② | ③ | ④ | ⑤ |
| 주민자치회의 확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읍면동(지역, 마을단위) 중심의 사업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읍면동 행정혁신 | ① | ② | ③ | ④ | ⑤ |
|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기초지자체의 종합적 기획역량 증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부 부처 간 사업연계 활성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3.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중복
응답 가능)

- | | | |
|----------------|--------------|-------------|
| ① 현장의 인력 부족 | ② 현장의 전문성 부족 | ③ 사업예산 부족 |
| ④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 | ⑤ 지역의 역량 부족 | ⑥ 행정적 지원 부족 |
| ⑦ 지역 특성 고려 미흡 | ⑧ 사업 홍보 부족 | ⑨ 없음 |
| ⑩ 기타 (| |) |

문14. 주민자치 및 주민관점 지역사업 지원 분야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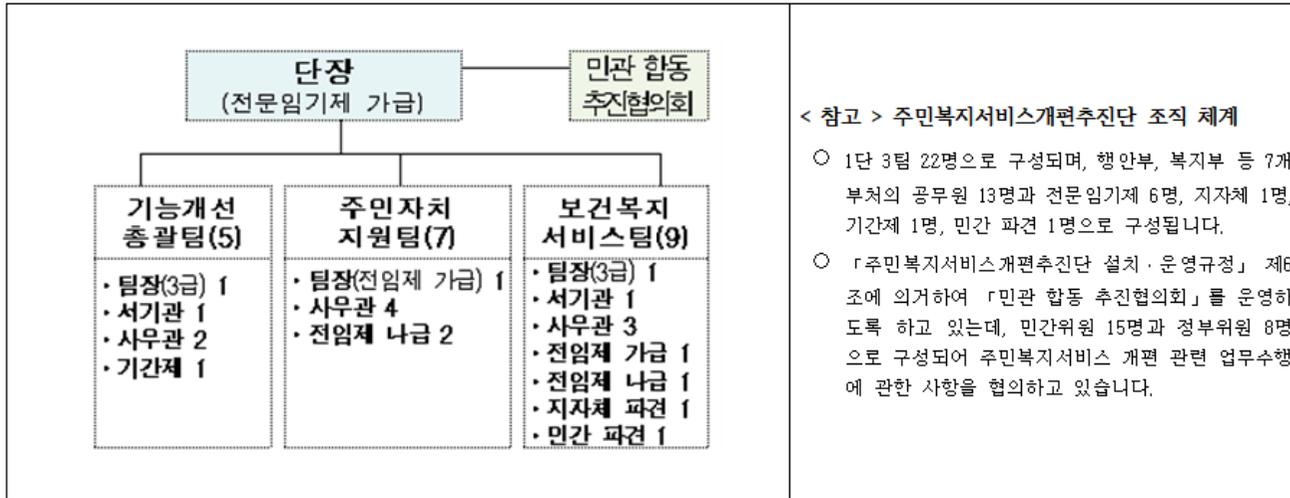
- | | | |
|-------------------|--------------|-------------|
| ① 현장의 인력 충원 | ② 현장의 전문성 확보 | ③ 사업예산 확보 |
| ④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⑤ 지역의 역량 강화 | ⑥ 행정적 지원 확대 |
| ⑦ 지역 특성 고려한 사업 추진 | ⑧ 사업 홍보 확대 | ⑨ 없음 |
| ⑩ 기타 (| |) |

IV.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 관련

※ 다음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이전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의 조직,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 현재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의 **조직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작은 수준 ② 작은 수 ③ 적절한 수준 ④ 큰 수준 ⑤ 매우 큰 수준



문19.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이 지방자치단체(읍면동)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역할 및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유지
- ②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확립
- ③ 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집행의 유연성 보장
- ④ 다부처의 읍면동 현장 정책사업의 조정 역할
- ⑤ 읍면동 주민자치, 보건복지 정책전문성 강화
- ⑥ 기타 ()

문20.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주민자치 분야 등)을 평가하시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민복지 서비스개편추진단(이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의 미래적 조직체계 및 정책사업 실행체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 구 분 | 의견 제시 |
|--|----------------|
| 1. 미래 사회·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르는 주민복지 서비스개편추진단의 향후 미래적 조직체계 및 정책사업 실행체계 구축방안 | 1. 2. 3. |
|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자유로운 의견 | 1. 2. 3. |
| 3. 자치분권, 지방자치 2.0,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 혁신 정책사업은? | 1. 2. 3. |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개인정보는 설문 응답과 별도로 관리되며, 설문 응답에 대한 사례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즉시 파기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를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설문조사의 응답에 대한 사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부록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보건복지 분야 등) 평가를 위한 설문

ID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현 주민복지 서비스개선추진단)이 추진해 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개선방안과 대안,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정책과제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정보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응답자 및 응답의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 ♣ 연구 진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 전대욱 연구위원
- ♣ 설문 문의: 033-769-9850, ischoi@krila.re.kr
- ♣ 연구 지원: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

〈 개 요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크게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두 개의 분야로 나뉘어지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연계 사업과 2021년 신설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II.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주요사업 평가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이중 보건복지 분야는 다음과 같은 추진사업과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응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 야 | | 추진과제 |
|-----|---------------------------|---|
| 1 |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 ① 공공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 2 |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③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④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
| 3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지원 분야 | 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⑥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⑦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 4 |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주민자치지원 분야 | ⑧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⑨ 주민자치 기반 민·관 협력 확대 ⑩ 지역 공모사업 연계·지원 |

| 추진사업 | 주요 추진과제 |
|---------------------|---------------------------------|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업무 개편(복지 + 건강 기능강화) |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 |
| |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
| 주민력 강화 지원 |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
| |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

비전 통합돌봄·사례관리를 통한 함께 살아가는 지역만들기

- 목표**
- 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 ② 시군구(읍면동) 연계협력 체계 확립
 - ③ 주민력 강화
 - ④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기본방향

- '22년까지 전체 읍면동은 인력확충 상황에 따라 「기본형*」을 거쳐 「확장형**」으로 추진
 - * 기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돌봄지하브화)의 기본형과의 주요 차이점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인력 1명이 추가된 형태
 - ** 확장형 : 기본형의 발전된 형태로, 인력확충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읍면동 종합상담 기능 확대, 지역의 공공서비스 연계기능 강화 등을 실질화 하는 유형
- 미전환 지역은 여건에 따라 「기본형」 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 * 현재 기본형인 경우 현행 유지, 권역형 중심 읍면동인 경우 기본형으로 전환 원칙

■ 조직모형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조직모형(안)

| 구분 | 모델 | 기능 | 조직 | 인력 |
|-----|----------|--|--|--|
| 동·읍 | 기본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복지+건강' 기능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3명, 간호 1명 |
| | 확장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범위 확대(신규) · 종합상담 심화(신규) · 민관연계 확대(신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복지 7명, 간호 1명 |
| 면 | 기본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동 기본형 모델과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미설치 (전담 인력만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2명, (팀장 및 복지행정담당 인력 제외) 간호 1명 |
| | 농어촌 특성화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형 모델과 동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2명, (팀장 및 복지행정담당 인력 제외) 간호 1명 |

2

주체별 기능 및 역할

- ◆ 읍면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주민력 강화지원 등 주민 중심의 실행기능, 시군구는 민관협력·자원연계 등 기획기능으로 업무조정
 - 읍면동 보건복지팀은 규모에 따라 기본형(최소 4명), 확장형(최소 8명)으로 구분하며 인력충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업무 확대
- ◆ 시군구는 공공·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계획수립, 서비스 공급, 자원연계 등 민관협력 컨트롤타워로 역할 확대
 - 의제 설정, 서비스 공급 등 지역사회 서비스를 계획화·자원화·구조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도 〉



3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1) 기본방향

-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등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각 자치단체별 인력충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기본형→확장형)
 - (기본형) 복지+간호인력이 협업하여 종합상담, 방문상담,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 등 서비스 내실화
 - (확장형) 생애주기별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상담 강화, 주민참여형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 질 제고
-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중심에서 노인 진입 가구(65세), 출산·양육 가구, 고난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병원·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등으로 확대

〈 예시 : 시군구 및 읍면동 부서별 업무개편안 〉

| | 읍면동 | | 시군구 |
|-----|---|--|---|
| 구분 | 복지행정팀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복지정책 총괄부서 |
| 기본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상담 • 단위사업 관리 • 민관자원 접수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담 청구 설치 • 위기가구 발굴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및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 실시 • 민간자원 발굴·연계 • 복지+건강기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획·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읍면동 추진상황 모니터링/평가 등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총괄 |
| 확장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담 강화(전담인력 배치) • 서비스 연계 강화 • 생애전환기 등 방문대상 확대 • 민관협의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성화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민력 강화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의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역할 강화 지원 • 자원연계협력 총괄 • 민관협력 체계구축 |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화 >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요약) >

| 추진 방향 | ①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제 해결 및 발생가능성 높은 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 구축에 초점 → 단일한 중앙부처 사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간의 연계·협력, 주민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서비스·자원·문제해결 능력 확장 | | | | | | |
|--|--|---|--|-----|--|---|---|
| | ② 기존의 개인 욕구 충족, 보육 자원 중심의 연계·협력을 지역 문제해결 및 예방, 필요자원 생산 등으로 역할 강화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50%;">기 존</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확 대</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욕구 충족 중심 • 기존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기관별 별도 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 사업 중심 연계 </td> <td style="font-size: 2em;">+</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제해결 및 예방 중심 •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 생산 • 다양한 주체의 연계 협력 강화 • 민간사업을 포함한 연계·협력·생산 </td> </tr> </table> | 기 존 | | 확 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욕구 충족 중심 • 기존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기관별 별도 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 사업 중심 연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제해결 및 예방 중심 •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 생산 • 다양한 주체의 연계 협력 강화 • 민간사업을 포함한 연계·협력·생산 |
| 기 존 | | 확 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욕구 충족 중심 • 기존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기관별 별도 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 사업 중심 연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제해결 및 예방 중심 •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 생산 • 다양한 주체의 연계 협력 강화 • 민간사업을 포함한 연계·협력·생산 | | | | | |
| 연계 대상 | ① (기존)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일부 중앙정부 사업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② (확대) 보건소 등 건강관련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내의 공공, 민간기관 수행사업을 포함하여 서비스 연계·협력·생산으로 확대 | | | | | | |
| 추진 주체별 역할 | 시도 - 시군구 모니터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획총괄 | | | | | | |
| | 시군구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실무 총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모니터링,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사회 민관협의기구 운영 및 지원,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자원관리 총괄(자원 및 서비스 생산 등) | | | | | | |
| |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컨트롤타워,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계획 심의 및 조정(실무협의체/실무분과활동) | | | | | | |
| | 읍면동 -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지역 내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지역문제 발굴(지역현황파악,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자원 조사, 필요한 서비스·자원을 시군구 등에 요청 | | | | | | |
| | 민간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지역문제 조사, 읍면동 단위의 민간기관 네트워크 구축, 주민 역량강화 교육 설계 및 운영 | | | | | | |
| | 주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지역문제 발굴에 주도적 참여 및 지역유구·자원 조사 참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참여 등 | | | | | | |

3 주민력 강화 지원

1) 개요

- (개념) 주민력은 공공서비스의 기획, 생산, 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 (주민) 실질적 주거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터나 교육 등 일상생활의 이유로 정기적·지속적으로 지역 내 모든 자원(인프라 포함)을 이용하거나 소통을 나누는 모든 사람
- (주민력) 공공서비스의 기획, 생산, 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
- (지역력)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 가능

- (추진방향)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을 강화(주로 공공영역)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인적·물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주로 민간영역) 도모
 - ①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강화는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사업기획·실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행정영역과 수평적 관계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
 - ②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은 의제화(문제발견)에서 실행(문제예방·해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

2) 추진계획

- 주민력 강화 지원 분야는 주민들의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여건조성과 주민활동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구분
 - ① (기반 여건) 지역문제의 확인 및 해결과 관련된 지식정보, 사회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 등 지식정보 공유체계 마련
 - 소통, 돌봄 등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場)을 확충
 - ② (활성화 지원) 지역문제의 확인 및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행
 - 이 과정에서 주민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문제 확인·해결능력 제고
 - ⇒ 읍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주관하여 읍면동 지사협 등과 협업하여 실행

※ 아래의 응답 예시는 추진사업 분야의 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 비슷하면 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②~⑤ 사이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예시) | 매우 중요 | ← | | | 비슷 | → | | | 매우 중요 | 평가기준(예시) |
|---------------------|----------|---|---|---|----|---|---|---|----------|---------------------|
| | | ④ | ③ | ② | | ② | ③ | ④ | |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 |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

문06. 다음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추진사업 분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 매우 중요 | ← | | | 비슷 | → | | | 매우 중요 | 평가기준 |
|---------------------|----------|---|---|---|----|---|---|---|----------|---------------------|
| | | ④ | ③ | ② | | ② | ③ | ④ | | |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
|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력 강화 지원 |
| 주민력 강화 지원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

문07. 다음의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업 | 중요도 | | |
|----------------------------------|-----|---|---|
| | ① | ② | ③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① | ② | ③ |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 ① | ② | ③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복지+건강 기능 강화) | ① | ② | ③ |

문08. 다음의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 매우 중요 | ← | | | 비슷 | → | | | 매우 중요 | 평가기준 |
|--------------------------------------|----------|---|---|---|----|---|---|---|----------|--------------------------------------|
| | | ④ | ③ | ② | | ① | ② | ③ | |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 개편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 (복지+건강 기능 강화) |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업무 개편 (복지+건강 기능 강화)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

문09. 다음의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업 | 중요도 | | |
|-------------------------|-----|---|---|
| | ① | ② | ③ |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 ① | ② | ③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 | ① | ② | ③ |
|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 ① | ② | ③ |

문10. 다음의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 매우 중요 | ← | | | | → | | | | 매우 중요 | 평가기준 |
|-------------------------|----------|---|---|---|---|---|---|---|---|-------------------------|------|
| |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 | |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 |
|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기반 구축 | |

문11. 다음의 「주민력 강화 지원」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 매우 중요 | ← | | | | → | | | | 매우 중요 | 평가기준 |
|-----------------|----------|---|---|---|---|---|---|---|---|--------------|------|
| |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민력 강화 기반 지원 | |

Ⅲ. 보건복지 분야 추진사업에 관한 설문

문12. 행정안전부의 주민복지서비스개선추진단의 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목표(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 확대, 시군구(읍면동) 연계협력 체계 확립, 주민력 강화,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달성과 현장중심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3.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은 추진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각 분야가 **사업의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진분야 |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비교적 영향을 덜 미침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 상당히 영향을 미침 |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
| 지자체 보건복지 인력확충 | ① | ② | ③ | ④ | ⑤ |
| 시군구·읍면동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 시군구·읍면동 복지 + 건강 기능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 ① | ② | ③ | ④ | ⑤ |
| 주민력 강화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부처 간 연계 활성화(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중복응답 가능)

- ① 현장의 인력 부족
- ② 현장의 전문성 부족
- ③ 예산 부족
- ④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율
- ⑤ 지역의 역량 부족
- ⑥ 행정적 지원 부족
- ⑦ 지역 특성 고려 미흡
- ⑧ 사업 홍보 부족
- ⑨ 없음
- ⑩ 기타 ()

문15.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중복응답 가능)

- ① 현장의 인력 충원
- ② 현장의 전문성 확보
- ③ 예산 확보
- ④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⑤ 지역의 역량 강화
- ⑥ 행정적 지원 확대
- ⑦ 지역 특성 고려한 사업 추진
- ⑧ 사업 홍보 확대
- ⑨ 없음
- ⑩ 기타 ()

IV.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 조직 운영

※ 다음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이전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의 조직,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6. 현재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의 **조직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작은 수준 ② 작은 수준 ③ 적정한 수준 ④ 큰 수준 ⑤ 매우 큰 수준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단장 (전문임기제 가급)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 </div> </div>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기능개선 총괄팀(5)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3급) 1 • 서기관 1 • 사무관 2 • 기간제 1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주민자치 지원팀(7)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전임제 가급) 1 • 사무관 4 • 전임제 나급 2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보건복지 서비스팀(9)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3급) 1 • 서기관 1 • 사무관 3 • 전임제 가급 1 • 전임제 나급 1 • 지자체 파견 1 • 민간 파견 1 |

< 참고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조직 체계

- 1단 3팀 22명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복지부 등 7개 부처의 공무원 13명과 전문임기제 6명, 지자체 1명, 기간제 1명, 민간 파견 1명으로 구성됩니다.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설치·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관련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됩니다.

개인정보는 설문 응답과 별도로 관리되며, 설문 응답에 대한 사례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즉시 파기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를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설문조사의 응답에 대한 사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